

#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심혜인

2021.12.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202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9 791191 094091

93320

---

#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심혜인

2021.12.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요 약

## 1. 연구 목적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화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
- 2021년 현재 e나라도움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들과도 상당 부분 연계가 완료되었으며,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
  -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고보조금 제도 전 과정을 통합적 관리하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보조금 관련 정보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는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판단, 분석, 계획하는 데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음
- e나라도움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들을 정제, 가공하여 대국민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
  - 현재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 항목은 주로 시스템 사용자, 즉 행정 실무자 관점에서 생성된 정보를 정보공개 목적에 의해 단면적으로 공개
  - 종합적인 지표체계를 마련하여 재정 여건, 정책성과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집계통계 항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통계의 구체적인 지표체계 항목 제시 측면보다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측면에 초점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정보들을 최대한 포괄하여 다루고자 노력
  -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e나라도움 포털의 통계센터 정보 제공 현황 분석
  -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유정보 항목들을 살펴보고, 시스템에 축적된 2020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봄으로써 통계지표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

###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심혜인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68

✉ analysis@kpfis.or.kr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화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

□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고민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 국고보조금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다각도에서 진행

- 국고보조금 관련 선행연구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로써 국고보조금 기능과 효과 분석,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기준 등에 관한 연구,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조정체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 분석 등 다양

○ 반면, 통계지표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안 이루어짐

## 2. 국고보조금 제도 일반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 또는 재정상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을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님

- 교부 주체는 국가이며,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라 함
- 국가의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법률적 근거와 다수의 부처에 의해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다시 실제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분류체계상의 민간보조사업 또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해당

○ 보조사업 관련자는 크게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수급자, 거래처)로 구분

○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 절차는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정산,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보조금법」에서 요구되는 의무, 책임, 요건 등을 규정

- 예산편성 단계는 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시작하며, 이 단계를 통해 보조금의 대상 사업, 경비,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이 정해짐
- 중앙관서의 장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 중 하단계로 보조사업을 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예산안을 통지해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지급대상, 지원내용, 시행주체, 보조형태, 사전신청 여부, 예탁여부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됨

〈표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성격

구분	내용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교부주체	•국가
교부대상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
교부근거	•법률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출의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이 일반적
교부방식	•직접 교부, 재교부
보조사업 관련자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
주요 법·규정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 3. e나라도움시스템 일반

□ e나라도움시스템은 보조금 처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구축

- 보조사업 관리의 전 과정 시스템화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수행
  - e나라도움은 예산 사업구조를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가 모두 시스템을 통해 연결
  - 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배정, 교부, 이체가 일 단위로 집계되며, 보조금을 실시간 건별 지급하므로, 이러한 일 단위 건별 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거래에 대한 검증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
- 업무효율화, 중복·부정수급 방지, 정보공개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축
  - 이를 달성하기 위해 e나라도움의 시스템은 행정망으로 연결되는 업무지원 포털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대국민 포털로 구성되어 운영
- e나라도움시스템은 통합적 관리를 위해 3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관련된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등과 대부분 연계
  - 3대 재정관리시스템은 dBrain시스템, e호조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을 의미하며, 관련된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 16개 시스템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 관리는 예산편성 및 배정,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정산관리, 사후 관리의 네 단계로 구분,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조금 관련 정보 생성
  - 예산편성 및 배정 업무는 중앙관서 담당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 등록 정보,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 정보 생성
  - 교부 신청 및 결정 업무는 중앙관서, 지자체, 보조사업자 담당자 등에 의해 수행되며, 보조사업 공모·등록 정보, 교부 신청 및 결정·처리 정보 생성
  - 집행·정산 단계에서는 집행합계금액, 보조금전용카드 정보, 예탁금 정보 등 집행 정보, 교부이체 정보, 정산검토 정보, 정산반납 정보, 납부계획 정보, 기타 이월 정보 등 생성
  - 사후 정보공시 단계에서는 상세내역사업, 공시년도, 집행금액, 교부금액, 정산금액 등의 공시정보와 중요재산 기준금액 등 중요재산 공시정보 생성

- e나라도움 포털 정보공개는 보조사업 단위의 건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미시적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동일한 정보 항목이 반복 제공되는 등 한계 존재
-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 통계센터는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단위에서 교부,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정보와 공시정보를 공개
  - 국고보조금 통계는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집행 규모와 관련된 예산현황, 집행현황, 비교검색, 연도별 추이 제공
  - 보조사업 통계는 보조사업 현황, 수행단계별 현황, 평가현황, 서비스유형별 현황 제공으로 보조사업 상위의 내역사업 정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정보, 그리고 예산, 집행, 평가 현황 등 보조사업 정보 제공
  - 보조사업자 통계는 보조사업자 현황, 유형별 비교통계, 연도별 추이 제공으로 보조사업/보조사업자 정보와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제공
- 통계 항목을 보면, 비교 차원이 분야·부문별, 부처별, 비목별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결과지표도 예산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수, 보조사업 수로 제한

#### 4. e나라도움 보조금 통계의 특성

- 통계의 기본 성격과 국고보조금 통계로서 갖는 특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잘 답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지표체계 설계에 앞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살필 필요
  - 통계의 일반론적 정의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내포된 수량적 정보’로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정보 등 용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됨
  - 통계청(2020)은 통계의 특성을 익명성, 객관성, 정확성의 3가지로 설명
- 통계의 품질은 단순히 통계의 정확성, 신속성만이 아니라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접근성 등
- 국고보조금 통계는 행정 데이터 기반의 실제적이고 수량화·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기본 목적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포괄하는 범위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범위로, 이 영역은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중 주로 보조사업 관점의 정보에 해당
- 국고보조금 통계는 대상의 한정성, 범위의 제약성, 정보의 실용성, 정책 활용성 등의 특성 지님

- 있으며, 교부반납ID, 교부이체ID, 집행ID, 검토ID, 증빙요청ID, 계좌번호, 은행코드, 세부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등으로 연결
- 공통 영역은 교부처, 사용자 등, 총괄조정 영역은 연장평가, 심사결과 등, 정보공개 영역은 재산대장, 정보공시기본 등의 테이블로 구성

〈표 3〉 국고보조금 통계의 네 가지 특성

구분	내용
대상의 한정성	• 정부의 재정 운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 - 「보조금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제한
범위의 제약성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 - 통계지표가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 - 지표체계는 e나라도움의 자료를 상당 부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정보의 실용성	•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계가 가능하므로,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의 강점 -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므로 보조금 통계 역시 예산정보, 사업정보, 법령정보 등 데이터가 주요 기반이 되며 정부의 예산 과정과 밀접
정책 활용성	• 추상성보다는 구체성에 가까운 행정통계의 특성상 정책 활용에 유리

- 보조사업 관련 업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보조금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DW)에는 5개의 주제 영역별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DW의 5개 주제 영역은 과제관리, 보조사업관리, 집행정산관리, 공통 및 총괄조정, 정보공개로 구분
  - 과제관리 영역은 계약, 과제, 재산대장, 중요재산기준 등 여러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관리번호, 과제번호, 계약관리순번 등으로 연결
  - 보조사업관리 영역은 내역사업기본, 상세내역사업기본 등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ID, 세부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공모번호, 과제번호, 예산확정구분코드, 사업정보구분코드 등으로 연결
  - 집행정산 영역은 카드, 정산, 정산검토, 전자세금계산서 등 테이블로 구성되어

- e나라도움 보조금DW 정보는 보조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기본정보와 그 밖에 다양한 선택 정보들로 구분할 수 있음
-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 정보에 해당하거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저장되어 보다 높은 신뢰도 보여주는 항목 존재

## 5.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 방향

- 국고보조금 통계는 현상의 파악을 지표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지표를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
- 현상 측정을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개발의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지표 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그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전수에 가까운 보조사업 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미시적 정보에 대해 일관된 통계 기준으로 객관적 분석·비교하도록 하는 설계의 부족 때문
  - 국고보조금 통계의 잠재적 사용자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 국고보조금 통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될 필요
- 국고보조금 통계 이용자는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회원 가입 사용자) 여부와 소속이 정부 관계자인지 여부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

-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각각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즉 효율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지표가 필요
- e나라도움시스템 비사용자 중 정책 결정자 또는 입안자의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또는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한 정무적 평가와 방향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서 통계지표를 이용할 것임
-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이론, 제도, 정책 효과 분석 등을 위한 통계가, 일반 국민은 국정 상황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누구나 국가 정책 및 지표를 더 잘 이해하고 국정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통계 필요

〈표 4〉 국고보조금 통계의 잠재적 사용자 구분

구분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회원)	e나라도움시스템 비사용자
정부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서 관리/담당자</li> <li>• 지방자치단체 관리/담당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결정자, 입안자 (기재부 장관, 중앙관서의장, 지자체장 등)</li> </ul>
일반 국민 (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신청자</li> <li>• 상위보조사업자 담당자</li> <li>• (민간) 보조사업자 담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수령자(수급자, 거래처)</li> <li>• 연구자/일반 국민(향후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국가재정 현황을 모니터링하려는 자 등)</li> </ul>

주: e나라도움시스템을 회원 가입을 통해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하였음. 보조금 수령자는 수급자와 거래처로 구분.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의 설계는 기준의 일관성, 내용의 포괄성, 정보의 실용성 및 제도 특성, 통계의 신뢰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
-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 자료 수집의 시기와 방법, 표본의 설계, 작성 항목, 자료처리 계획 등을 명확히 할 때 통계는 타당성을 확보
  - 행정통계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사용할 목적이 많은 만큼 통계작성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 통계 기준 설정을 통해 통계작성의 중복 등을 예방하고, 사전에 기술적 검토를 통해 통계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e나라도움시스템 보유정보를 대부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염두
  - 단일 주제 영역이나 관점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유정보를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
- 지표체계는 일차적으로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정부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제도의 변화 등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지표체계에 존재하는 공백은 향후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정보로 기능

- 국고보조금 통계는 보조사업 정보의 관점에서 누가(who), 무엇을 위해(for what), 어떻게(how), 누구에게(for whom)라는 4가지 차원의 기준으로 설명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누가(who) 차원, 대상 사업과 용도 등 정보는 무엇을 위해(for what) 차원, 보조 형태나 전달체계 형태 등은 어떻게(how) 차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정보는 누구에게(for whom) 차원
  - 지방자치단체가 재교부하는 역할을 맡을 경우, 교부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에 해당하므로 누가(who)와 누구에게(for whom)가 모두 적용

〈표 5〉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대상 차원

구분	주요 대상
누가 (who)	• 교부 주체인 중앙관서와 재교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 상위 보조사업자 정보
무엇을 위해 (for what)	• 대상 사업과 용도 등 보조사업 정보
어떻게 (how)	• 급여/사업지원, 정률/정액 등 보조 형태, 전달체계 형태 등 정보
누구에게 (for whom)	•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수급자, 거래처) 정보

□ 잠재적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지표의 측정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 e나라도움 포털은 서비스 경로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계를 보여줌
  - 예산편성 정보 외에는 대체로 사업설명 정보 위주의 비정형 데이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고민이 없다면 예산액 규모,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수 이외에 수량화된 지표를 도출해내기 매우 어려움
- 정책적, 실무적, 학술적 판단 등에 필요한 여러 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 항목을 고민할 필요
  - 보조사업의 (7가지) 목적별 구분, 근거 법령의 구분, 보조금 총량 규모나 보조율 등 구간 범위 설정, 평균(또는 최대, 최소) 기준보조율 값 등
- 보조금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 필요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결산 과정이 없고,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산 정보를 주요하게 다룰 필요
  - 교부액 기준, 정산액 기준, 추경포함예산 기준, 예산현액 기준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총량 규모를 적용하며, 혼란 없도록 반드시 기준 명시

-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 시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의미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추가하는 순서
- 보조사업 관련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대부분 필수 첨부자료 또는 입력 정보의 형태로 저장
  - 사업 단계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은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후 교부 신청 과정에서 보조사업 등록이 처음 이루어짐
    - 주로 예산편성 단계 정보가 내역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가지며, 교부 관리 단계 이후 발생 정보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가짐

〈표 6〉 국고보조사업 단계별 주요 제출 자료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계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4,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전 신청)</li> <li>• 예산(안) 통지내역(§12, 민간이전 예산 통보는 선택 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사업, 경비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9, 매년 예산으로 정해짐)</li> <li>» 차등보조율(§10, 관련 사항은 국회보고 의무)</li> </ul> </li> <li>• 연장평가결과(§15,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li> </ul>
교부관리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16, 공모사업의 사업 목적,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등)</li> <li>• 교부 결정 통지내역(§19,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 작성 내용)</li> </ul>
집행관리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26의2)</li> <li>•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26의2)</li> <li>•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26의2)</li> </ul>
정산관리 (사업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첨부서류(§27)</li> <li>• 보조금 확정 통지내역(§28), 감사보고서(§27의2) 등</li> </ul>
정보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 신청서,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중요재산 공시내역 등(§26의10)</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격 적격여부(§26의2),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단(§36의2) 등</li> </ul>

주: 「보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근거가 되는 조항의 번호는 §로 표기함.

- 내역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 대표적인 정보는 기본속성, 예산계상 신청 내역, 자치단체이전 예산 통보 내역, 그리고 연장평가 결과 등
-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현재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통계지표 발굴을 위한 노력
    - 예를 들어,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는 122개의 지급 대상 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대한 실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기준보조율 값을 10% 또는 20% 구간 단위로 나누어 보조율 구간별 사업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도 의미
    - 또 하나의 예로,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정보, 보조사업 수, 보조사업자 수 이외에 평균 기준보조율, 보조사업 목적 구분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집계 통계화하여 공개

- 또한 내역사업별 근거 법령 정보를 모아서(예컨대 사회보장기본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각 기본법을 기준으로) 관련 법들을 묶고 해당 법 유형에 근거한 보조사업 규모나 사업 현황 통계를 산출
- 이 밖에 내역사업별로 공개되는 정보 외에도 매년 연장평가 결과가 첨부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데 이를 의미 있는 지표 형태로 조정하여 제공 등

□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 정보로는 공모 정보, 교부 결정 정보,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 정보, 정산보고서 내역, 보조금 확정 통지 내역 등

- 특히 보조사업 단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제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보조금 교부 방식은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어 보조금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보조사업 단위의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보조사업 차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
  - 또 다른 예로, 국고보조금이 dBrain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체되었더라도 e호조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이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들므로 실집행 정보 중요
  - 또한 자치단체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에서 세부사업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 국고보조율과 근거 법령 등이 주요 속성정보로 기능해야 하며, 집행실적 현황을 보여주는 집행률도 여러 측면에서 보완 필요
  - 이 밖에도 시스템 보유정보 중 실무 단계에서 관리 영역 밖으로 정의되어 관심에서 제외되는 정보들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 6.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보조사업 단위의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형태로 산출·제공하고 있는 국고

보조금 통계에 대해 법·제도 및 이론적 접근과 보유정보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 관점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합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e나라도움 보유정보 분석과 법·제도 관점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계의 체계적·포괄적 파악에 초점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의 원칙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 항목들을 정의하고 작성하는 과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표의 개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혼합 지표 개발이나 정책 효과성 판단 지표 산출을 위해 정보 수집의 영역을 확대해 가기를 기대

---

# 목 차

<b>I. 서론</b> .....	<b>1</b>
1. 배경 및 목적 .....	1
2. 분석 범위 및 방법 .....	2
<b>II. 국고보조금 제도 일반</b> .....	<b>4</b>
1. 정의 및 개념 .....	4
2. 국고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6
가. 보조사업 관련자.....	6
나. 보조사업 운영 절차.....	7
다. 국고보조금의 예산분류 .....	8
3. 국고보조금의 유형.....	10
4. 국고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14
<b>III. e나라도움시스템 일반</b> .....	<b>16</b>
1. e나라도움시스템 개요.....	16
가. 목적 및 기능.....	16
나. 시스템 구성 .....	19
2. e나라도움 프로세스와 생성 정보 .....	21
가. 예산편성 단계 .....	21
나. 교부관리 단계.....	24
다. 집행·정산 단계 .....	26

# 목 차

라. 공시·공개 단계	27
3.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 ‘통계센터’	28
가. 국고보조금 통계	29
나. 보조사업 통계	31
다. 보조사업자 통계	32
라. 한계 및 시사점	35
<b>IV. e나라도움 보조금 통계의 특성</b>	<b>36</b>
1. 통계의 개념 및 기준	36
가. 통계의 개념	36
나. 통계품질의 기준	38
2. 국고보조금 통계의 특성	40
가. 목적 및 포괄범위	40
나. 보조금 통계 특성	41
3.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DW	43
가. 과제관리 영역	44
나. 보조사업관리 영역	45
다. 집행정산 영역	47
라. 공통·총괄조정 및 정보공개 영역	49
마. 주요 정보 항목 분석	50

<b>V.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 방향</b>	<b>59</b>
1. 지표설계의 기본 원칙	59
가. 주요 목적	59
나. 제공 대상	61
다. 기본 원칙	62
2. 통계지표 체계의 구성	65
가. 대상 차원	65
나. 통계지표의 구성	66
3. 통계지표 항목의 설계	67
가. 설계 순서	67
나. 내역사업 단위 항목	68
다. 보조사업 단위 항목	71
<b>VI. 요약 및 시사점</b>	<b>73</b>
1. 분석내용의 요약	73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77
<참고문헌>	79
<부 록>	81

---

## 표 목차

〈표 2-1〉 국고보조금의 목적	4
〈표 2-2〉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성격	5
〈표 2-3〉 보조사업 관련자의 구분	6
〈표 2-4〉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 기준	10
〈표 2-5〉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분류	13
〈표 3-1〉 e나라도움 주요 기능	19
〈표 3-2〉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정보공개 항목	30
〈표 3-3〉 보조사업 통계 정보공개 항목	32
〈표 3-4〉 보조사업자 통계 정보공개 항목	34
〈표 4-1〉 통계가 갖는 일반적 특성	37
〈표 4-2〉 통계품질의 5가지 결정 요소	40
〈표 4-3〉 국고보조금 통계의 4가지 특성	43
〈표 4-3〉 과제관리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44
〈표 4-4〉 보조사업관리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46
〈표 4-5〉 집행정산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48
〈표 4-6〉 공통 등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49
〈표 4-7〉 분야별 보조사업 현황(2020년 기준)	56
〈표 4-8〉 소관별 보조사업 현황(2020년 기준)	57
〈표 5-1〉 국고보조금 통계의 잠재적 사용자 구분	62
〈표 5-2〉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대상 차원	65
〈표 5-3〉 국고보조사업 단계별 주요 제출 자료 항목	68
〈표 5-4〉 신규 내역사업의 기본속성 등록 항목	70

---

## 그림 목차

〈그림 3-1〉 e나라도움 전체 구성도	20
〈그림 3-2〉 e나라도움 정보공개 메뉴 구조 및 개요	28
〈부록 1〉 e나라도움 민간이전 사업 전체 업무흐름도	81
〈부록 2〉 e나라도움 자치단체이전 사업 전체 업무흐름도	84

# I. 서론

## 1. 배경 및 목적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2021년 국고보조금의 예산 규모는 97조 9,000억 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규모의 17.5%까지 비중이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e나라도움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들과도 상당 부분 연계가 완료되었으며,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제도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방대한 양의 보조금 관련 정보가 모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는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판단, 분석, 계획하는 데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e나라도움시스템은 이렇게 축적된 각종 국고보조사업 정보들을 정제, 가공하여 대국민 포털의 통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 항목은 주로 시스템 사용자, 즉 행정 실무자의 관점에서 생성된 정보를 정보공개 목적에 의해 단면적으로 공개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정보의 단순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표체계를 마련하여 재정 여건, 정책성과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집계통계 항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 환류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행정통계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통계의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체계적인 통계 관리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산출·제공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해 체계적 관점에서 특징을 파악하고 통계지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나라도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지표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보조금 정책 당국, 국민, 보조사업자, 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법·제도 및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3장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요와 국고보조금 프로세스별 생성 정보들을 살펴보고, 4장에서 국고보조금 통계가 갖는 특성을 파악한 후 5장에서 통계지표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요약 및 시사점으로 이 글을 맺는다.

## 2. 분석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정보들을 최대한 포괄하여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표체계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보다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현재 국고보조금 통계의 산출·공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나라도움 포털의 통계센터 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은 통계센터 카테고리에서 국고보조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통계센터 제공 항목들을 대상으로 통계의 작성 목적, 유사·중복성, 상호 연관성, 비교성, 신뢰성, 활용성 등을 살펴보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본다.

셋째,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유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중 내역

사업 및 보조사업별 주요 속성 항목에 대해 시스템에 축적된 2020년 실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통계지표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방대한 국고보조사업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화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통계지표 작성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II. 국고보조금 제도 일반

### 1. 정의 및 개념<sup>1)</sup>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sup>2)</sup>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출연금·출자금과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법률적 근거와 다수의 부처에 의해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7가지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1).

〈표 2-1〉 국고보조금의 목적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등 건설사업)
- 재해 지역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 사업의 보급·장려 (혐오시설 또는 주민 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1)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2021)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2) 「보조금법」 제2조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재정지원 형태에 따라 협의의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로, 교부 주체는 국가<sup>3)</sup>, 교부 대상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대상 사업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하며, 이때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라고 한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출의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조금의 교부는 국가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이를 실제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주요 법·규정으로 「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그 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 등 중앙관서의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존재한다.<sup>4)</sup>

〈표 2-2〉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성격

구분	내용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교부주체	국가
교부대상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
교부근거	법률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출의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이 일반적
교부방식	직접교부, 재교부
보조사업 관련자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
주요 법·규정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3)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4)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정규칙으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주요 부처, 주요 사업별로 보조사업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행정규칙은 각 중앙관서 별로 고시, 훈령 등의 형태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권오성·윤기웅, 2016).

## 2. 국고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 절차는 크게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정산,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조금법」에서는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관련 주체들의 의무와 책임, 절차의 기한 및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가. 보조사업 관련자

보조사업 관련자는 크게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예산 전반을 총괄하며, 자치단체이전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친다. 다음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소속관서, 기금관리·운영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보조사업자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으로,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유형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표 2-3〉 보조사업 관련자의 구분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예산 전반을 총괄, 자치단체보조 중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수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앙관서의 장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 경우에 따라 소속관서, 기금관리·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업무 위임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광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자로 구분
보조금 수령자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나. 보조사업 운영 절차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운영 절차는 크게 예산편성→교부관리→집행·정산→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산편성 단계는 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시작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제출하며(제4조),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예산 신청을 검토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한다(제6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제7조).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안을 회계연도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한다(제12조). 이와 같은 예산편성 단계를 통해 매년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비,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이 정해지며, 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둘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교부 신청 방식은 공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공모에 의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제16조), 부처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여부가 결정된다(제17조). 한편 신청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경우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교부 신청이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제16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제19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나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다(제21조).

셋째, 집행·정산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을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 보조사업자 및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 등이 제시된다. 우선,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제22조).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제25조).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교부 신청서, 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제26조의10).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제27조), 보조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제27조의2). 한편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통해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가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8조). 또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넷째,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것이 발견될 때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제31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33조). 또한 「보조금법」에서는 반환 이외에도 명단 공표, 벌금 등 보조사업자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다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다. 국고보조금의 예산분류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분류체계상에서는 민간보조사업 또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sup>5)</sup>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국제협약, 정부 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 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이 해당한다.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 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며,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 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 정책상 지방자치단체에 자본 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장실패 치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해당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설정한다.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작성하며,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 방식 또는 기준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한편 중앙관서의 장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을 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이때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르는데 그 내용은 <표 2-4>와 같다.

5)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5.

〈표 2-4〉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 기준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 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별로 탄력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 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 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li> <li>•(작성 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별로 분류</li> <li>•(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 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li> </ul>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 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li> <li>•(작성 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li> <li>•(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li> </ul>

자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2.

### 3. 국고보조금의 유형

국고보조금은 지급대상, 지원내용, 시행주체, 보조형태, 사전신청 여부, 예탁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급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된다. 자치단체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상 지방자치단체에 자본 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장실패 치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원 등이 해당한다. 민간보조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국가 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뉜다. 경상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보조이고, 자본보조는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 자본의 증식을 위한 보조금이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이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직접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의 보조금이다. 반면에 간접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제 보조사업자인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재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보조 형태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는 정률보조금과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정률보조와 정액보조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에 근거하여 그 적용 대상이 다르다. 정액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사무에 대해 일정한 보조금을 정액으로 교부하는 것인데,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등은 정액으로 보조된다. 정률보조금은 비례적 보조금이라고도 하며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사업 중 대부분은 보조율이 정해진 정률보조사업이다. 정률보조금 중 대부분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일률보조금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차등보조율에는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보조율과 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등에 따라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단체별 차등보조율이 있다.

보조금 신청 여부에 따라서는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보조금을 신청보조금이라고 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 없이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을 무신청보조금이라고 한다. 「보조금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 재해 발생 등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예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e나라도움에 예탁하는 예치형 사업과 예탁 없이 직접 수행하는 비예치형 사업으로 구분한다. 예치형 사업은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 등록 및 집행 요청, 상위보조사업자 승인에 따른 실시간 집행과 정산·반납까지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예치형 사업은 IT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보조사업 집행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사업, 해외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등으로 사업 특성상 예외 사유를 감안하여 보조금 관리기관이 결정하며 예탁계좌 이체 없이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금융거래는 은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조금 관리기관, 자치단체 및 거래처 등 이해당사자 간에 직접 수행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사업수행형 보조사업과 급여형 보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수행형 사업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해당하며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급여형 사업은 직불금, 보상금, 폐업지원금 등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지급되는 사업자금 형태의 사업이다. 사업수행형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접수행형, 사업 수행을 하위보조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위탁수행형, 복합 형태인 복합수행형으로 나뉜다. 급여형 사업은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급형과 공공·민간 등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간접지급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수행형은 보조사업자가 정산의 의무를 지며, 급여형 보조금 수급자는 정산의 의무가 없다.<sup>6)</sup>

6) 직접수행형 사업은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는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유형이다. 지자체 또는 공공·민간기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와 거래를 진행하며, e나라도움에서 내역사업 구조화, 예산편성, 배정업무, 지출 요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와는 달리 위탁수행형 사업은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는 내역사업 밑으로 하위 사업들이 있고 지자체나 공공·민간기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해당 보조사업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 유형이다. e나라도움에서는 내역사업 구조화, 예산편성, 배정업무, 보조사업관리, 교부, 정산검토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국고보조사업은 ① 사용용도 제한성 유무(특정/일반보조금)에 따라, ② 편성권자의 재량 개입 여부(의무/재량지출)에 따라, ③ 사업계속성 여부에 따라, ④ 일몰사업 여부에 따라, ⑤ 공모신청 여부에 따라, ⑥ 보조금 교부조건 여부(특정/포괄보조금)에 따라, ⑦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개방형/폐쇄형보조금)에 따라, ⑧ 보조율의 차등 기준(일률/차등보조금) 등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 2021).

〈표 2-5〉 국고보조금의 목적 및 분류

구분	종류	성격
지급대상	자치단체보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보조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 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
지원내용	경상보조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보조
	자본보조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 자본 증식을 위한 보조금
시행주체	직접보조금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의 보조금
	간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제 보조사업자인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재교부하는 보조금
보조형태 (지방비 부담 방식)	정액보조금	특정한 사업이나 사무에 대해 일정한 보조금을 정액으로 교부하는 보조금
	정률보조금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보조금
	무신청보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 없이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보조금예탁 여부	예치형	보조금을 e나라도움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
	비예치형	예탁계좌 이체 없이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금융거래는 은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조금관리기관, 자치단체 및 거래처 등 이해 당사자 간 직접 수행
사업수행 여부	사업수행형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해당되며 수행 형태에 따라 직접수행형, 위탁수행형, 복합수행형으로 나뉨
	급여형	직불금, 보상금, 지원금 등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지급되는 사업자금 형태의 보조 사업으로 직접지급형과 간접지급형으로 나뉨

## 4. 국고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기능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주제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로서 보조금의 기능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김태일 외(2001)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로서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를 기존과 다른 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박기묵(2006)은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 이론과 특별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이용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재정 불균형 감소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국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지역의 자본 생산성 향상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윤석완(2007)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국가보조금이 지역 간 자본 생산성을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달성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기준에 대한 연구도 많다. 권오성(2005)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정도와 혜택을 지역적 범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보조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유사 사업의 경우 동일 보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원희 외(2013)는 최소한 국가적 책임성, 보조금 사업 영향의 지리적 범위, 사회적 연대 또는 결속을 유형화 기준으로 삼아 기준보조율을 제시하였으며, 심지현(2014)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 여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정도를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재원(2015)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유형을 복지사업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재량 기준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준보조율도 50~90%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손인호 외(2018)는 서울시 기준보조율을 중심으로 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의 발전 방향을 세출 관리 측면에서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 조임곤(2016)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의무적 부담사업에 대한 별도

세출 관리,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조정체계 구성, 국고 보조율 관행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세출 관리 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수단으로서 보조금의 효과에 관한 연구도 있다. Salamon(2002)은 정부가 선택한 정책 수단이 정책 결과를 담보할 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황창호(2015)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정부 성과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편 윤기웅·공동성(2012)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의 단계를 계획, 집행, 평가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오윤섭·홍수완(2015)은 보조사업 추진체계의 복잡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국고보조사업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와 재교부가 반복됨에 따라 보조금이 직접 수령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전체적인 골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삼주 외(2015)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이 기준보조율 설정 시 재원보조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시책사업 선정 및 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 소액보조사업·신청주의·차등보조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하여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지표 관련된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통계지표체계의 방향성을 고민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 Ⅲ. e나라도움시스템 일반

#### 1. e나라도움시스템 개요

##### 가. 목적 및 기능

###### 1) 운영 목적

e나라도움시스템<sup>7)</sup>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정리·활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e나라도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16년 12월 「보조금법」의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보조금법」 제26조2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야 하며, 통일·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8)</sup>

또한 e나라도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up>9)</sup> 현재 e나라도움시스템은 통합적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명칭은 2016년 9월 공모전을 통해 'e나라도움'으로 확정되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의 모든 처리 과정을 인터넷(e)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와 나라(국가)가 보조금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e나라도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8) 그 밖에 e나라도움의 구축 및 운영은 「보조금법」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등을 근거로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7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관리를 위해 3대 재정관리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하 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하 e호조;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이하 에듀파인)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밖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하, Agrix) 등 16개의 부처 자체 보조사업관리시스템과 4개의 유사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sup>10)</sup> 또한 금융결제원의 OTP, 은행, 카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이체 내역 등의 정보를 얻고 있으며, 86개 공공·민간기관의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의 예산 요구, 교부, 지출, 정산 등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대법원, 국세청, 고용보험 시스템 등 34개 대상 시스템과의 연계로 수급자 통합관리 및 자격 검증, 중복·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 2) 주요 기능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 관리의 전 과정 시스템화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에서부터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나라도움은 예산 사업구조를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및 하위 보조사업자가 모두 시스템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 집행·정산 및 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9) 「보조금법」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근거로 한다.

10) 「보조금법」 제3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이 e나라도움 외의 다른 정보시스템 등에서 관리된다. 현재 e나라도움 외에 16개 시스템에서 국고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e나라도움은 정산보고서 작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통합예탁관리기관에 증빙 등록을 통해 보조금 이체를 요청하면, 국세청, 카드사 등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 이후 실시간으로 건별 지급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온라인 정산을 통해 실적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실적보고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근거하여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 반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통합관리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관리하고, 수급 자격 검증, 지출 증빙 검토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사후 정산 등 국고보조금 전 과정에서 중복·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신청 단계에서 보조사업의 특성에 대한 정보(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단계에서 온라인 지출 증빙으로 실시간 검증을 수행하여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사후 정산 및 집행 반환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한 경우 대법원, 국세청과 연계하여 지원 목적에 벗어난 재산 활용을 방지한다.

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배정, 교부, 이체가 일 단위로 집계되며,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건별 지급하므로 이러한 일 단위 건별 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거래에 대한 검증과 중복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통합예탁기관의 계좌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금의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도록 전용계좌로 운영하며, 지출 내역을 허위 증빙하거나 중복 등록을 하는 경우, 거래처가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등 실시간 집행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검증된 거래처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건별로 지급한다.<sup>11)</sup>

11) 이를 위해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13개 카드사의 보조금 전용카드 신고 및 승인 내역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20개 은행과 연계하여 보조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 e나라도움 주요 기능

구분	분야	내용
효율적 관리	예산관리	•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 관리
	집행관리	• 국고보조금 전용계좌 도입, 국비, 지방비 등 자원별 관리 • 교부 및 집행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집행실적 저조 사업 적시 조치
	사업관리	• 국세청, 카드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증빙관리 및 검증 • 정산보고서 등 정산 업무 자동화
	수급자관리	• 범부처 수급자 통합DB 구축, 부처 간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공유 가능 •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자격검증 및 수급이력 검증
중복·부정 수급 방지	유사중복 검증	• 보조사업관리항목 표준화 • 보조금 예산편성 등 각 단계별 유사·중복사업 검색 기능 제공
	부정수급 방지	• 부정 징후 모니터링 및 패턴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 관계 시스템 연계에 의한 자격·증빙·가격 검증으로 사전-집행-사후 등 각 단계별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대국민 감시 및 서비스	정보공개	• 보조사업 성과 판단 가능하도록 부처별, 분야별 비교통계 제공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정보, 부정수급 현황 공개
	맞춤형 서비스	• 개인별 수혜 가능한 맞춤형 보조금 정보 제공 • 공모 중인 사업 신청 및 진행 확인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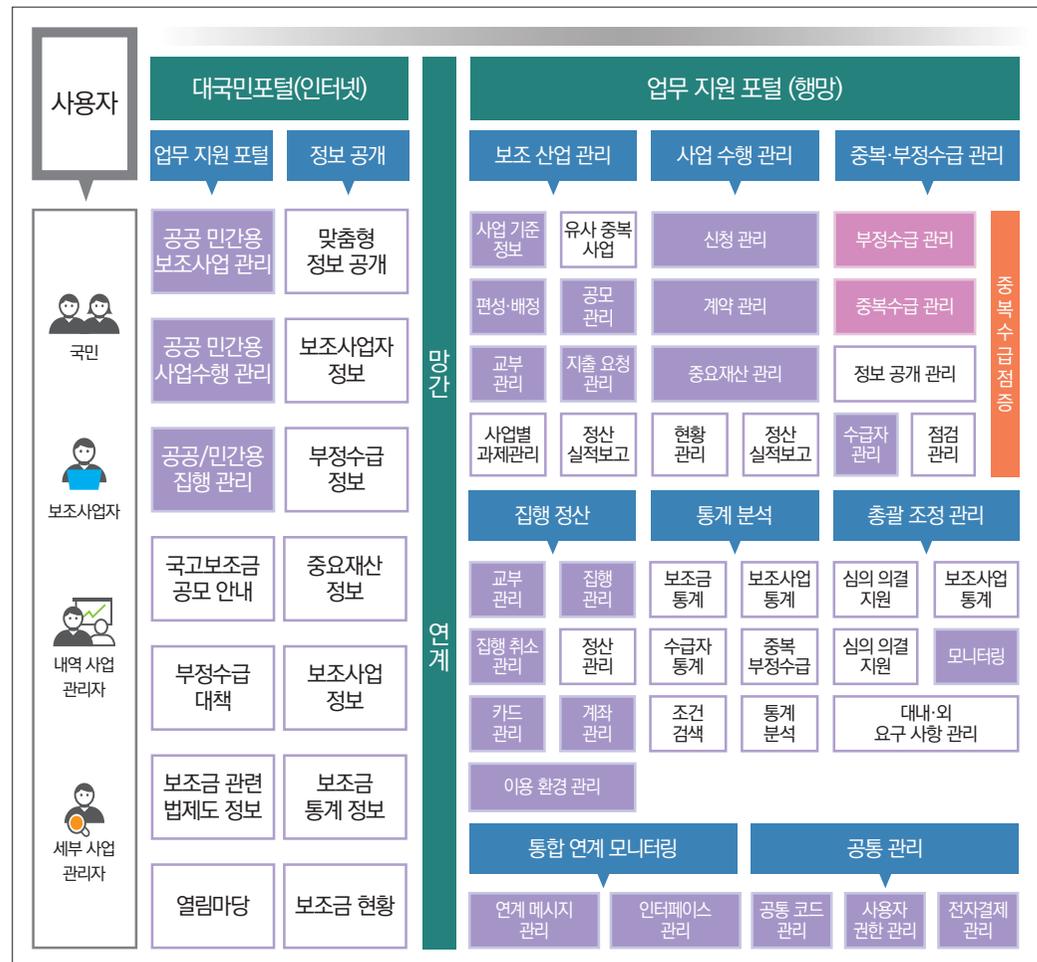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나. 시스템 구성

e나라도움은 업무 효율화, 중복·부정수급의 방지, 정보공개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축되었다. 첫째,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검증하고,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나라도움의 시스템은 행정망으로 연결되는 업무 지원 포털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대국민 포털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우선, 행정망으로 연결된 업무 지원 포털은 보조사업 관리, 사업수행 관리, 집행·

정산, 중복·부정수급 관리, 통계분석, 총괄조정 관리, 통합 연계 모니터링, 공통 관리 기능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터넷으로 연결된 대국민 포털은 크게 업무 지원을 위한 세션과 정보공개를 위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국민 포털의 업무 지원 파트는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관리, 사업수행 관리, 집행관리, 공모 안내, 부정수급 대책, 보조금 관련 법·제도 정보 등 기능을 지원하며, 정보공개 파트는 맞춤형 정보공개, 보조사업자 정보, 중요재산 정보, 보조사업 정보, 보조금 통계 정보, 보조금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e나라도움 전체 구성도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2018. 재인용)

## 2. e나라도움 프로세스와 생성 정보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거의 모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금 관리 업무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는 크게 예산편성 및 배정,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정산관리,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본고 부록 1, 부록 2 참고).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조금 관련 정보가 생성된다. e나라도움시스템의 기본 업무 내용 및 이와 연관된 주요 정보로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가. 예산편성 단계

예산편성 및 배정 업무는 중앙관서 담당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크게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sup>12)</sup> 즉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1) 내역사업 구조화를 통해 사업 생성 후, dBrain의 세부사업 예산 정보를 수신받아 (2) 내역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확정하고, 이후 세부사업 담당자가 (3) 내역사업별로 예산 및 사업 배정을 하는 순서이다. 이 과정에서는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 등록 정보,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 정보가 생성되는데, 주로 보조금DW의 내역사업과 세부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관리되고 있다.

#### 1) 내역사업 등록 정보

e나라도움시스템은 최초 사업 생성 단계에서 내역사업 등록(내역사업관리자)→내역사업 검토 및 확정(세부사업 관리자)→내역사업 담당자 지정(세부사업 담당자)의 절차를 거쳐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을 구조화한다. 즉 내역사업 등록 단계에서 내역사

12) 「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예산안 요구 시 사업 정보를 e나라도움을 통해 입력하고,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업 관리자는 dBrain시스템에서 수신 받은 세부사업 정보를 통해 e나라도움에서 내역사업 단위로 구조화한다.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로서 「보조금법」 제 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sup>13)</sup> 내역사업은 기획재정부와 담당 부처의 보조사업 담당자가 협의하여 확정하고 코드화하여 등록하며, 사업 등록 시 각 내역사업의 기본속성과 공통속성도 정해진 속성분류표에 따라 반드시(개별속성은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sup>14)</sup> 이와 같이 내역사업을 등록하면 세부사업 관리자는 내역사업 관리자가 등록한 내역사업에 대해 검토한 후 최종 내역사업을 확정한다. 이후 세부사업 담당자는 해당 내역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순서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내역사업ID를 비롯하여 내역사업명, 사업시작/종료일자, 존속기간 여부, 보조사업 유형, 보조형태 구분, 근거 법령 내용 등 모든 내역사업의 기본정보와 선택정보 항목, 그리고 예산상 매핑되는 상위 세부사업의 기본정보 항목 등의 정보가 관리된다.

## 2) 예산편성·배정 정보

내역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부사업 관리자, 내역사업 관리자 및 재정책임관이 내역사업 예산편성→내역사업 예산조정→내역사업 예산확정의 절차를 거친다. 즉

13) 이처럼 e나라도움시스템은 예산 사업구조를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및 하위보조사업자가 모두 시스템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내역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과 매핑(mapping)하여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연결한다. 또한 내역사업은 여러 개의 상세내역사업(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상세내역사업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과 매핑하여 연계한다.

14) 「통합관리지침」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e나라도움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고,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동 지침의 별표2(내역사업 상중하 단계별 분류 기준)와 별표4(내역사업 관리속성 기준)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내역사업 중 하 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 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① 내역사업 기본속성 등록, ② 공통속성 매핑, ③ 개별속성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각 내역사업에 내재된 속성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이력관리는 물론 유사중복사업 검토, 정보공개 등에 활용한다.

세부사업 관리자는 dBrain에서 넘어온 세부사업의 정부안, 국회 예산을 수신받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내역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내역사업관리자는 세부사업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을 조정한 후 재정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재정책임관은 내역사업 관리자가 제출한 조정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 내역사업별 예산을 확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이전사업 예산은 e호조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하며,<sup>15)</sup>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또한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즉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는 자치단체이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의 경우 통보할 광역시와 주무과를 선택하고 통보할 통보액(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금, 재정융자금, 자기부담금 항목을 입력, 필요시 해당 시군구 선택 후 통보액일을 입력하며, 교육재정의 경우 통보할 교육청을 선택한 후 통보액을 입력한다.<sup>16)</sup> 이후 내역사업 예산배정 관리 단계에서는 세부사업 담당자가 내역사업 예산배정과 내역사업 사업배정의 절차를 거친다. 즉 내역사업 예산배정 단계에서 세부사업 담당자는 dBrain의 세부사업 예산배정 정보를 받아 내역사업별로 예산배정을 등록하며, 내역사업 사업배정 단계에서 세부사업 담당자는 dBrain의 세부사업 사업배정 정보를 받아 내역사업별로 사업배정을 등록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 예산기금 구분, 기금변경 구분, 예산확정 구분, 추경차수, 지출세목, 예산금액, 조정금액, 예산배정액 등의 정보가 생성된다.

15) 자치단체이전사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예산을 통보해야 e호조시스템에서 통보한 예산을 가지고 (가)내시 등록 작업을 하여 사업을 매핑할 수 있다.

16) 민간이전의 경우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예산통보는 선택사항이다.

## 나. 교부관리 단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교부 신청 및 결정 업무는 중앙관서, 지자체, 보조사업자 담당자 등에 의해 수행되며 크게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즉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1) 보조사업 등록 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2) 교부 신청을 하면 여러 과정을 거쳐 (3) 교부 결정 및 통보(지자체는 e호조시스템 교부)를 하는 순서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보조사업 공모 정보와 보조사업 등록 정보,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처리 정보들이 생성된다.

### 1) 보조사업 등록 정보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조사업 등록 단계는 보조사업의 공모 여부 및 지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공모사업은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개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아 자격검증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유형의 사업으로 일반 공모형과 기관자체 공모형 사업이 있다.

일반 공모형은 상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을 공모한 유형으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공모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는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내역사업 담당자 지정→공모등록(중앙관서)→공모사업 신청(보조사업자)→공모신청 접수→보조사업자 선정→선정 결과 통보(중앙관서)→선정 후 추가정보 입력→사업등록 제출(보조사업자)→최종사업 확정(중앙관서)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기관 자체 공모형은 상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유형으로, 상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된 자체 공모 결과를 등록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을 진행한다. 한편 지정사업은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되는 사업 유형으로, 일반 지정형 사업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적합한 사업자를 지정하면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사업등록을 한다.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보조사

업자 지정(중앙관서/지자체)→사업등록(보조사업자)→사업등록 접수→최종사업 확정(지자체)의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는 공모번호, 공모관리번호, 사업개요, 선정기준, 주관기관 등 공모내역 정보와 사업연도, 과제정보, 상세내역사업, 상위사업, 수행기관, 신청·작성일자, 국고보조금액, 사업목적·내용, 공모여부, 사업장소, 사업대상, 대상자 수, 세부추진계획, 수행기관 등의 보조사업 등록 정보가 생성된다.

### 2) 교부 신청·결정 정보

보조금 교부 단계는 중앙관서에서 내역사업 담당자가 보조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공공·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지자체는 e호조) 내역을 접수 후, 교부 결정 금액을 등록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e나라도움에서 지출요청서를 작성한 뒤 dBrain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지출하면, 상위보조사업 담당자는 통보받은 교부 결정 금액을 교부하기 위해 교부집행 등록을 한다. 이체 담당자가 보조금을 이체하고 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내역 및 이체내역 확인을 할 수 있다.

즉 담당자별 보조사업 지정(중앙관서)→교부 신청(공공·민간은 e나라도움, 지자체는 e호조)→교부접수→교부 결정 및 통보(중앙관서, 상위보조사업자)→지출요청서 작성(중앙관서), 교부집행 등록(상위보조사업자)→보조금 지출(중앙관서), 교부이체(상위보조사업자)→교부이체 확인(보조사업자)의 절차를 거친다.<sup>17)</sup>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연도, 과제번호 등 과제 정보, 교부신청자 수, 상세내역사업 정보, 신청기관, 교부 신청진행 상태 등 교부 신청 정보와 교부금액, 결정금액, 결정·통지일자, 교부 결정사유, 결정근거, 결정수행기관, 결정행정일선관서, 기타 교부변경 관련 내역 등 교부 결정 정보가 생성된다.

17) 단, 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교부 신청 건을 e호조시스템에서 교부 처리한다.

## 다. 집행·정산 단계

### 1) 집행관리 정보

e나라도움시스템의 집행 단계는 예치 여부에 따라 수행 업무가 달라진다. 예치형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및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각 보조사업의 예탁계좌가 생성되어 상위보조사업자는 이 예탁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의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건별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기타(파일 첨부) 증빙을 등록하여 거래처에 집행할 수 있다. 한편 비예치형 사업은 IT 취약계층, 해외사업자 등 국내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보조금 예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이체 작업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체를 진행 후 e나라도움에 집행 결과를 등록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사업ID를 기준으로 집행실행일자, 재원구분코드, 보조세목, 증빙구분, 집행합계금액, 집행변경상태, 집행요청등록원장 정보, 보조금전용카드 정보, 예탁금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 집행 정보와 교부요청일자, 교부요청금액, 교부이체일자, 교부이체금액, 연계시스템구분코드, 교부 신청자 수, 상위상세내역사업 등의 교부이체 정보가 생성된다.

### 2) 정산관리 정보

정산 단계는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따라 방법이 상이하다. 우선, 민간보조사업은 사업 종료 시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마감하고 이자, 잔액, 수익금을 등록 및 확인하면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또는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내역들을 검토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보완할 내용이 없는 경우 검토 완료를 한다. 상위에서 보완 요청한 집행 건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집행정

보 수정 또는 집행 취소로 보완을 거쳐 모든 검토가 끝나면 정산완료 처리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정산 실적을 작성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내역사업 담당자 등은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정산보고서를 확정하며, 보조사업자는 잔액, 이자 등이 있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반납,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민간기관에서 반납한 금액을 중앙관서의 징수요청에 따라 중앙관서로 반납한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담당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징수요청 후 dBrain시스템을 통해 정산을 완료한다.

반면,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이 e호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산 단계에서 자치단체 담당자가 e호조를 통해 정산 자료를 e나라도움으로 송신하면 중앙관서 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지자체에서 송신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 e나라도움을 통해 징수요청 후 dBrain을 통해 정산을 완료한다.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징수요청에 따라 e호조를 통해 중앙관서로 반납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sup>18)</sup>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정산ID를 기준으로 정산구분코드, 정산일자, 사업비국고보조금액, 국고보조금교부수신 및 지급 금액, 정산검토정보, 정산반납정보, 납부계획 정보, 기타 이월 정보 등이 관리되고 있다.

## 라. 공시·공개 단계

e나라도움시스템은 정보공시 등 사후관리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보조사업 총액(국고보조금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민간보조사업자 등은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sup>19)</sup>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정보공시 대상 확인 후 정보공시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내역 등 정보공시 내용을 등록하고, 등록된 공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e나라도움 대

18) 근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의 실집행액 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19) 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지에 따라 공시 시기가 결정된다.

민 홈페이지에 공시를 확정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상세내역사업, 수행기관, 공시년도, 집행금액, 교부금액, 정산금액 등의 공시 정보와 중요재산 기준금액 등 중요재산 공시 정보가 생성된다.

### 3.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 ‘통계센터’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의 정보공개 메뉴 구조도는 <그림 3-2>와 같다.<sup>20)</sup> 이 통계센터 카테고리는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단위에서 교부, 집행,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 및 공시 정보를 공개한다. 보조금 관련 정보를 크게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현황에 대해 분야별, 부처별, 비목별 비교 등을 통한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2> e나라도움 정보공개 메뉴 구조 및 개요

e나라도움 소개	맞춤형보조금찾기	공모사업찾기	정보공시	통계센터	참여와 소통
e나라도움 근거법령 e나라도움 주요기능	보조금 TOP10 실시간 검색 TOP10 주제별 인기 TOP10	공모사업 TOP10 실시간 검색 TOP10 주제별 인기 TOP10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개요 정보공시 조회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집행현황 비교 검색 연도별 추이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하기 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 부정수급이란?
국고보조금	맞춤형 검색 간편검색 조건검색 상세검색 이용방법 안내	공모사업 검색 공모사업 찾기 이용방법 안내 공모일정조회	중요재산 정보공시 개요 정보공시 조회 중요재산 공시 현황	보조사업 보조사업 현황 수행단계별 현황 평가 현황 서비스 유형별 현황	국민의 소리 정치제안 설문조사
관련법령					자주묻는질문
메뉴얼 사용자메뉴얼 동영상메뉴얼					열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웹툰 홈페이지 이용 안내
		통계·공시정보			

자료: e나라도움 포털.

20)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은 통계·공시정보, 맞춤형 검색정보, 업무지원정보의 세 가지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통계지표 설계에 있는 만큼 통계·공시 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e나라도움 포털의 정보공개 내용은 심혜인(2020)을 참고하라.

### 가. 국고보조금 통계

e나라도움 통계센터의 국고보조금 통계는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집행 규모와 관련된 통계지표를 제공하며, 예산현황, 집행현황, 비교검색, 연도별 추이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국고보조금 예산현황은 연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통계를 총괄, 분야·부문별, 분야별 비교현황, 중앙부처별, 중앙부처별 비교현황, 비목(목·세목)별의 6가지 소분류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통계 제공 시기는 2017~2021년의 연도별 자료이며, 제공 통계는 국고보조금 예산액 및 비중, 내역사업 수, 보조사업 수에 대한 분야·부문별, 중앙부처별, 지출목별, 보조사업 유형별(사업형·급여형) 및 상세유형별(위탁수행·직접수행·직접지급·간접지급), 보조형태별(정액·정률) 집계 정보이다. 제공 형식은 웹페이지 상으로는 주로 그래프와 표 등 시각 정보 위주로 공개하고, 데이터 다운로드 시에는 예산 규모, 비중, 보조사업 수, 보조사업자 수 등 통계 정보를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집행현황은 예산현황과 같이 총괄, 분야·부문별, 분야별 비교현황, 중앙부처별, 중앙부처별 비교현황, 비목(목·세목)별의 6가지 소분류 기준에 추가로 내역사업별 집행 순위, 보조사업자별 집행 순위까지 총 8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행정보를 제공한다. 통계지표의 제공 시기는 2017~2021년의 월별 자료(매월 말 기준)이며 익월 15일에 업데이트된다. 제공 통계는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지출 규모, 교부액, 집행률 등에 대한 재원별, 분야·부문별, 중앙부처별, 지출목별 집계 정보이며, 제공 형식은 그래프, 표 등 시각화 정보와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내역사업별 집행 순위에서는 기준 시점에서 부처별 집행액 규모 상위 10개 내역사업명과 그 집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별 집행 순위에서는 부처별로 보조금 규모가 큰 수행기관과 다수 보조사업 수행기관 상위 10개까지 조회하여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비교 검색과 연도별 추이 탭을 통해 예산 및 집행 현황 통계를 선택적으로 분야·부문별 또는 중앙부처별로 비교하거나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

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 3-2〉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정보공개 항목<sup>21)</sup>

소분류	내용	항목
총괄 (차트,xls)	국고보조금 예산액 규모	국가예산대비 국고보조금 비중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비중
		지출목별(민간/지자체이전) 국고보조금 비중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
	내역사업 수	분야별 내역사업 수 비중
	보조사업 수	분야별 보조사업 수 비중
분야·부문별 (표,차트,xls, csv,txt)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15대 분야별 예산액 및 비중
		15대 분야·부문별 예산액 세부내역
분야별 비교현황 (차트,xls)	분야별 예산 및 내역사업 현황	15대 분야별 예산액
		15대 분야별 내역사업 수
		15대 분야별 보조사업 수
		15대 분야별 보조사업유형별(사업형·급여형)/상세유형별 (위탁수행·직접수행·직접지급·간접지급)/보조형태별(정액· 정률) 비중
중앙부처별 (표,차트,xls, csv,txt)	부처별 예산현황	부처별 분야/부문/지출목별 예산액
		부처,분야,부문,지출목,세목,예산액 세부내역
중앙부처별 비교현황 (차트,xls)	부처별 예산 및 내역/보조사업 현황	중앙부처별 예산액
		중앙부처별 내역사업 수 현황
		중앙부처별 보조사업 수 현황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유형별/상세유형별/보조형태별 비중
비목(목·세목)별 (표,차트,xls, csv,txt)	비목별 예산현황	지출목/세목별 예산액 및 예산비중
		지출목, 세목, 중앙부처,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 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별 예산액 세부내역

자료: 심혜인(2020).

21) e나라도움 포털 통계센터의 국고보조금 통계에서는 예산현황, 집행현황, 비교검색 및 연도별 추이를 제공하며, 그 구성이 대동소이하므로 본고에서는 예산현황의 항목만 제시한다.

## 나. 보조사업 통계

e나라도움 통계센터의 보조사업 통계는 보조사업 현황, 수행단계별 현황, 평가현황, 서비스유형별 현황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보조사업 상위의 세부사업, 내역사업 정보를 포함한 사업 정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정보, 그리고 예산, 집행, 평가 현황 등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사업 현황은 내역사업별 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내역사업별 현황에서는 회계연도, 중앙부처, 지출목, 내역사업명 등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선택 조건에 맞는 내역사업 목록이 조회되며 각 내역사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사업과 대응되는 보조사업 목록이 공개된다.

수행단계별 현황에서는 회계연도, 중앙부처, 지출목, 세부사업명 등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선택 조건에 맞는 내역사업 목록이 조회되며 각 내역사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사업과 대응되는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이 공개된다.

평가 현황에서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하여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보조사업 평가목록을 공개한다. 이 목록은 회계연도, 중앙부처,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기간(시작연도, 종료연도) 정보가 있으며, 목록 내 세부사업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의 평가보고서가 첨부파일로 공개된다.

보조사업 통계에서 조회되는 내역사업 목록은 회계연도, 내역사업명, 지출세목, 예산현액, 중앙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표 상단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엑셀, csv, txt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내역사업상세를 클릭하면 상위 세부사업명과 내역사업의 기간, 당해연도 사업비, 보조사업 기본유형 및 상세유형 등 내역사업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 목록에서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차수, 수행기관, 사업비(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타부담금) 정보가 공개되며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상세를 클릭하면 대응되는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정보와 함께 보조사업 정보가 공개된다.

〈표 3-3〉 보조사업 통계 정보공개 항목

중분류	소분류	내용	항목
보조사업 현황 (표, xls, csv, txt)	내역 사업별	중앙부처별/지출목별	회계연도-내역사업명-지출세목-예산현액-중앙부처 내역사업별 보조사업명-사업차수-수행기관-사업비(재원별)* *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기타부담금/합계
	보조 사업별	중앙부처별	회계연도-내역사업명-지출세목-예산현액 보조사업별 중앙부처 사업정보 중앙부처명-내역사업명-목-세목-세부사업명
수행단계 별 현황 (표, xls, csv, txt)	부처별	세부사업 목록	회계연도-세부사업명-지출세목-단위사업-계정-회계
		세부사업별 내역사업목록	내역사업명-지출세목-예산현액
		보조사업자 정보	보조사업명-사업차수-수행기관-사업비
평가현황 (표, pdf)	부처별	세부사업명	회계연도-중앙부처-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기간
서비스 유형별 현황 (차트, xls)	생애 주기별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지원액(확정예산/예산현액/실집행기준)
			생애주기별 지원 추이
			생애주기별-분야별 지원 현황
	대상별	경제활동/소득 기준/교육단위 등	각 속성별 지원 현황(확정예산/예산현액/실집행기준)
			각 속성별 지원 추이
			각 속성별-분야별 지원 현황
	주제별	18대 서비스 유형별	지원 현황(확정예산/예산현액/실집행기준)
			연간 추이
			중앙부처별 지원 비중

자료: 심혜인(2020).

## 다. 보조사업자 통계

e나라도움 통계센터의 보조사업자 통계는 보조사업자 현황, 유형별 비교통계, 연도별 추이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과 보조사업자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사업자 현황 통계

의 제공 시기는 2017~2021년의 월별 자료(매월 말 기준)이며 익월 1일에 업데이트된다.

우선, 보조사업자 현황은 연도별 보조사업자 현황을 보조사업별, 보조사업자별, 분야·부문별, 중앙부처별의 4가지 소분류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보조사업별 현황은 회계연도, 중앙부처, 보조사업명 또는 수행기관명 등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선택 조건에 맞는 보조사업 목록이 조회되며 보조사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이 공개된다. 보조사업 목록에서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차수, 수행기관, 사업비(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타부담금) 정보가 공개되며,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에서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차수, 수행기관, 사업비(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타부담금)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둘째, 보조사업자별 현황은 동일하게 회계연도, 중앙부처, 수행기관유형, 수행기관명 등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선택 조건에 맞는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이 먼저 조회되며, 목록 내 수행기관명을 해당 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목록이 공개된다. 또한 표 상단을 클릭하면 엑셀, csv, txt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보조사업상세를 클릭하면 대응되는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정보와 함께 보조사업 정보가 공개된다. 분야·부문별과 중앙부처별 현황에서는 각각 분야·부문 또는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수 및 비중 통계에 대해 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유형별 비교통계에서는 회계연도와 내국인, 외국인, 법인, 개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학교, 비영리법인의 7가지 보조사업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보조사업자 수의 연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와 표가 공개되며, 그래프 및 표의 상단을 클릭하여 xls 파일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추이에서는 분야·부문별, 중앙부처별의 2가지 소분류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 수 및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통계의 연도별 추이를 표, 그래프,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표 3-4〉 보조사업자 통계 정보공개 항목

중분류	소분류	내용	항목	
보조사업자 현황 (표, 차트,xls, csv,txt)	보조사업별	중앙부처별 보조사업 목록	보조사업명-사업차수-수행기관-사업비	
		보조사업자 정보	보조사업명-사업차수-수행기관-사업비	
	보조사업자별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정보	수행기관유형-수행기관명-수행보조사업 수-사업비	
		보조사업 목록	보조사업명-사업차수-수행기관-사업비	
	분야·부문별 중앙부처별	분야·부문별 보조사업자 현황	15대 분야별-부문별 보조사업자 비중	
			15대 분야별-부문별 보조사업자 수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현황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수 및 비중	
			중앙부처별-분야별 보조사업자 수 및 비중	
			중앙부처별-분야별-부문별 보조사업자 수	
	유형별 비교 통계 (표, 차트,xls)	유형별	보조사업자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연간 추이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 내국인/외국인/법인/개인사업자/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비영리법인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추이	
분야·부문별		분야·부문별	보조사업자 수 연간 추이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분야별-부문별-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중앙부처별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수 연간 추이	
			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중앙부처별-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연도별 추이 (표, 차트,xls)	분야·부문별	분야·부문별	분야별 보조사업자 수 추이	
			분야별-부문별 보조사업자 수 추이	
	중앙부처별	중앙부처별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수 추이	
			중앙부처별-유형별 보조사업자 수	

자료: 심혜인(2020).

## 라. 한계 및 시사점

e나라도움 포털 정보공개는 보조사업 단위의 건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미시적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하지만 현재 e나라도움 포털의 정보공개는 여러 카테고리에서 내역사업 목록, 보조사업 목록,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 내역사업상세, 보조사업상세, 보조사업 상세정보라는 동일한 정보 목록 또는 웹페이지에 이르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통계 항목을 보면 비교 차원도 분야·부분별, 부처별, 비목별로 매우 단순하고 결과지표도 예산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수, 세부(내역)사업 수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성 확보를 위해 e나라도움시스템에 모여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통계작성 목적을 갖춘 보다 다양한 통계 항목 발굴이 필요하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 전 과정의 모든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교부 신청서, 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e나라도움의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IV. e나라도움 보조금 통계의 특성

### 1. 통계의 개념 및 기준<sup>23)</sup>

통계의 일반론적 정의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내포된 수량적 정보’로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정보 등 용어와는 개념적으로 의미가 구분된다.<sup>22)</sup> 현재 전수에 가까운 보조사업 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차원의 미시적 수준의 정보가 일관된 통계 기준의 틀을 통해 객관적 분석·비교가 가능하게끔 설계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인 면이 크다. 따라서 먼저 통계로서의 기본 원칙과 국고보조금 통계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 이러한 기본적 특성들을 담을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지표체계의 설계 전 일반 통계로서 지녀야 할 원칙들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이후 다음 절에서 국고보조금 통계는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현재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DW에서는 어떠한 주요 정보 항목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고찰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통계지표의 지향점과 지표체계 원칙 등이 도출될 것이다.

#### 가. 통계의 개념

통계(statistics)란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내포된 수량적 정보를 의미한다. 즉 경제·사회적 현상이나 자연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수치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얻는 정보로서, 작성 방법에 따라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청(2020)은 통계의 특성을 익명성, 객관성, 정확성의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는 집단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로서 집단

을 구성하는 개체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는 제거되어 있다. 즉 통계 수치에는 개체를 식별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떤 개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통계의 특성을 익명성이라고 한다. 둘째, 통계는 존재가 명확히 규정된 집단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집단에 관한 규정 또는 제한이 객관적이어서 모든 관계자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객관적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통계라야 이것에 의해 통계의 분석·이용이나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통계의 분류 방법을 통일시키고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는 각종 표준분류를 제정하여 모든 통계집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통계는 집단에 관한 현상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사실을 진실하게 나타내야 하며, 이는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즉 정확성은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집단의 참값(진실치)에 얼마나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표 4-1〉 통계가 갖는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익명성	• 통계 수치에는 개체를 식별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는 제거
객관성	• 객관적 규정에 따라 만들어져서 분석·이용이나 상호 비교 가능 - 표준분류를 제정하여 통계집계에 활용함으로써 통계의 분류 방법 통일 및 일관성 유지
정확성	•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집단의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느냐를 의미

자료: 통계청(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흔히 데이터, 정보, 통계 등의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데이터는 기본적인 사실, 숫자, 측정치 등 단순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한 것,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요약, 처리된 데이터 등 데이터를 의미 있는 패턴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한편 지식은 정보를 사용자의 경험과 결합하여 현실에 적용,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와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규칙 집합으로 바뀔 때 얻을 수 있는데, 내포된 수량적 정보의 분석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통계는 지식에 해당한다.

23) 통계지표 일반을 설명하는 본 절의 내용은 주로 「통계법」을 근거로 하는 통계청(2020)의 정의 및 설명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한편 통계의 관리란 통계의 생산부터 품질관리 및 활용 등 통계자료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말한다(정광호 외, 2011). 통계자료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성상 어느 한 부분의 오류가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생산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유용성이 감소하며,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계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반적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관리를 통해 품질이 담보된 통계를 생산하고 그 통계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계의 관리는 생산, 제공, 활용 등의 통계자료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일관성·해석가능성을 위해 통계적 지식뿐 아니라 그 해당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통계 수요자인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부문의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통계품질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필요하며, 작성된 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나. 통계품질의 기준

통계의 품질관리란 통계 이용자들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면서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통계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를 말한다(통계청, 2020). 오늘날 통계의 품질은 단순히 통계의 정확성, 신속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접근성(명확성)의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기본 방향 설정에 있어 이와 같은 통계의 품질 결정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자 노력

하였다.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통계자료가 포괄범위, 개념,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통계작성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확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잘 측정했는가이다. 대부분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하므로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되며,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 간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시점 간의 차이가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며,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또한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비교성은 특정 통계에 대해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으로,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및 분류, 평가 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작성 주기가 부정기 또는 장기인 경우는 담당자 변동, 환경변화 등으로 과거 조사와 개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이 달라져 시간적 비교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추가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 자료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메타데이터) 제공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에 해당한다.

〈표 4-2〉 통계품질의 5가지 결정 요소

구분	내용
관련성 relev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하게 작성하여 제공하는가</li> <li>- 포괄범위, 개념,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li> <li>- 통계작성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li> </ul>
정확성 accur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잘 측정했는가</li> <li>-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되며,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음</li> </ul>
시의성 timel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 간 차이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li> <li>* 정시성(punctuality)은 예고된 공표 시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가를 의미</li> </ul>
비교성 compar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가</li> <li>-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 분류, 평가 방법 등의 적용</li> <li>- 작성 주기가 부정기 또는 장기인 경우 과거조사와 개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이 달라져 시간적 비교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li> </ul>
접근성 acces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li> <li>- 다양한 매체 통해 통계작성 과정, 자료 이용 방법 등(메타데이터) 제공</li> <li>* 명확성(clarity)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 의미</li> </ul>

자료: 통계청(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국고보조금 통계의 특성

국고보조금 통계는 행정통계에 해당하며, 통계작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는 대개 e나라도움시스템 보유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통계가 가지는 특성과 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가. 목적 및 포괄범위

국고보조금 통계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기본 목적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는 포괄적이고 질적·주관적 판단 기준이 가미된 정보보다는 주로 행정 데이터 기반의 실제적이고 수량화·구체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현황을 파악하며,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통계가 포괄하는 영역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범위로, 이 범위는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 주로 보조사업 관점의 정보에 해당하며 수혜 서비스 정보 등 정책적 영역은 논외로 하였다.

### 나. 보조금 통계 특성

국고보조금 통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잘 살펴야 한다.<sup>24)</sup>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국고보조금의 법·제도적 관점과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이론적 관점들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대상의 한정성이다. 여기에서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상당히 방대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운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보조금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고보조사업(특히 급여형 사업보다는 사업수행형 사업) 중심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국고보조사업 관점의 정보에 한정적인 경향이 있다.

둘째, 범위의 제약성이다. 범위의 제약성은 국고보조금 통계가 e나라도움시스템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란 국고보조금 지표체계의 틀을 통해 도출된 최종 정보 단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통계지

24) 국고보조금은 일반법상 근거인 「보조금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고보조금 통계 역시 「보조금법」에 명시한 절차 및 준수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가 e나라도움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은, (1) 통계지표가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과 (2) 지표체계는 e나라도움의 자료를 상당 부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는 확보할 수 없으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체계화된 통계지표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먼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지표의 체계를 설계하고, 이후 지표의 내용을 구상, 작성된 지표의 안정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에 해당한다.<sup>25)</sup>

셋째, 정보의 실용성이다. 국고보조금 통계의 생산은 e나라도움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지표체계의 구성과 지표 내용의 범위를 정해나가는 작업이 본질적으로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론은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포괄성을 담보로 하는데, 국고보조금 통계는 지표의 체계와 세부 지표로 활용되는 정보들을 이론적인 틀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반면, 행정 데이터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계가 가능하므로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고보조금은 일반 법령에 따라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므로 보조금 통계 역시 예산정보, 사업정보, 법령정보 등의 데이터가 주요 기반이 되며 정부의 예산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넷째, 정책 활용성이다. 내용 측면에서 추상정보보다는 구체성에 가까운 행정통계의 특성상 정책 활용에 유리하다. 경제·사회 현상에 대해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접근으로 도출한 통계지표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통계는 이론적 기반은 약할지라도 행정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때문에 정책 활용에 적용하기 수월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3〉 국고보조금 통계의 4가지 특성

구분	내용
대상의 한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재정 운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li> <li>- 「보조금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고보조사업(특히 급여성 사업보다는 사업수행형 사업) 중심으로 제한</li> </ul>
범위의 제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li> <li>- 통계지표가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li> <li>- 지표체계는 e나라도움의 자료를 상당 부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li> </ul>
정보의 실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데이터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계가 가능하므로,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이 존재</li> <li>-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므로 보조금 통계 역시 예산정보, 사업정보, 법령정보 등의 데이터가 주요 기반이 되며 정부의 예산 과정과 밀접</li> </ul>
정책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정보보다는 구체성에 가까운 행정통계의 특성상 정책 활용에 유리</li> <li>- 통계지표체계 설계에 있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검토 필요</li> </ul>

주: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 3.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DW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모든 보조사업 관련 업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은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정산,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조금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DW)에도 이와 유사한 5개의 주제 영역에 맞는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하고 있다.<sup>26)</sup>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DW의 5개 주제 영역은 공통 및 총괄조정, 과제관리, 보조사업관리, 집행정산관리, 정보공개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설

25) e나라도움시스템은 이미 3대 재정관리시스템, 자체 보조사업관리시스템, 유사보조금시스템, 공공·민간 시스템, 그리고 대법원, 국세청, 고용보험 시스템 등 대상시스템과의 연계에 의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조금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6) 각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는 테이블—칼럼의 구조로 나열되어 있으며, 데이터 타입은 정수(NUMBER), 또는 문자열(VARCHAR), 타임스탬프(TIMESTAMP) 형식으로, 테이블 유형은 마스터, 일반, 통계, 코드, 이력 테이블로 구분되어 있었다.

명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기준으로 주제 영역별 주요 정보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 가. 과제관리 영역

과제관리 영역은 4개(계약, 과제, 재산대장, 중요재산기준)의 마스터 테이블과 21개의 일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간에 계약관리번호, 사업연도, 과제번호, 계약관리순번, 재산관리번호 등의 기본키(PK) 및 외래키(FK)로 연결되어진다.<sup>27)</sup>

이 영역에서는 주로 공모 정보, 과제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 정보, 과제정보 중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 과제상세, 과제신청, 세목별 예산의 집행 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행기관, 자원별예산집행계획,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 정보, 과제별 집행정산 및 실적 정보, 실적보고서금액 등 정산실적보고서 정보, 중요재산 기준금액과 기준시작일자 등 중요재산 정보 등이 관리되고 있다.

〈표 4-3〉 과제관리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구분	내용
테이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터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과제, 재산대장, 중요재산기준</li> </ul> </li> <li>•일반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세, 공동도급, 공모예비등록, 과제, 과제상세, 과제신청, 교부 신청, 비목별계약금액, 비목별 재산금액, 사업수행포기신청,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실적, 수행기관, 수행자별교부 신청,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금액, 자원별예산집행계획, 중요대산대체, 중요재산등록 등</li> </ul> </li> </ul>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키(PK)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리번호, 계약순번, 거래처실명번호, 예비등록순번, 사업연도, 과제번호, 과제신청번호, 교부 신청자 수, 계약관리순번, 비목순번, 재산관리번호, 목적물장소순번, 수행기관ID, 추진계획순번, 상세내역사업ID, 수입비목코드, 자원구분코드, 중요재산유형코드, 재산대체번호, 재산대체순번, 중요재산등록번호 등</li> </ul> </li> </ul>

27) 기본키(PK, Primary Key)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고유한 식별자로서 그 값이 각 개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속성 혹은 속성 집합을 말하며, 외래키(FK, Foreign Key)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테이블 속성 또는 속성 집합이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 신청 관련) 사업연도, 과제번호, 교부 신청자 수, 상세내역사업ID, 상위사업ID, 신청기관ID, 작성·신청일자, 교부 신청제목, 교부 신청진행상태코드, 연계시스템구분코드 등</li> <li>- (보조사업 관련) 사업연도, 과제번호, 과제명, 상세내역사업ID, 상위사업ID, 수행기관ID, 신청·작성일자, 국고보조금액, 지방보조금액, 자부담금, 수행국고보조금액, 수행지방보조금액, 수행자부담금, 위탁국고보조금액, 위탁지방보조금액, 위탁자부담금, 사업목적·내용, 경비부담내용, 수익금처리내용, 자산부채사항, 사업종료·시작일자, 사업장소명, 사업대상내용, 대상자수내용, 과제신청번호, 공모여부, 공모번호, 과제진행상태코드, 보조사업유형코드, 사업시행목적물장소, 세부추진계획/실적, 수행기관 정보 등</li> <li>- (실적보고서 관련) 사업연도, 상세내역사업ID, 수행기관ID, 과제번호, 국고보조금액, 지방보조금액, 자부담금, 보조금비율, 국고보조금교부수신금액, 지방(광역/기초)보조금교부수신/지급금액, 당기분 집행금액, 전기이월금액, 전기이월분집행금액, 차기이월액, 보조금반환액, 재원(추진)계획대비실적내용, 사업평가내용, 검증기관ID, 검증확정일자, 검증내용, 검증후집행잔액 등</li> <li>- (계약 관련) 계약관리번호, 사업연도, 수행기관ID,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시작/종료/해지/변경일자, 거래처 정보, 계약유형코드, 계약구분코드, 계약방법코드, 계약금액, 납품기한일자, 납품장소명, 계약부서·담당자명, 입찰공고번호, 문서번호, 계약번호, 계약진행구분코드, 계약진행상태코드, 비목순번, 상세내역사업ID, 과제번호, 대표과제여부, 재산관리번호, 보조비목명, 보조세목명, 재원구분코드, 재원금액 등</li> <li>- (중요재산 관련) 재산관리번호, 취득연도, 세부사업ID, 내역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코드, 수행기관ID, 중요재산유형코드, 재산유형코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재산명, 규격명, 용도명, 주소구분코드, 건물관리번호, 재산유형별 구분코드, 취득수량, 취득단가,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코드, 중요재산기준금액, 재산대체번호, 공사시작·종료일자, 공사예정금액, 공사관리구분코드, 계약관리구분코드 등</li> </ul> </li> </ul>
----------	---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보조사업관리 영역

보조사업관리 영역은 2개(내역사업기본, 상세내역사업기본)의 마스터 테이블과 29개의 일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간 사업연도, 내역사업ID, 세부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공모번호, 과제번호, 예산확정구분코드, 지출세목ID, 재무관서코드, 일선관서코드, 예산지출구분코드, 사업정보구분코드, 수행기관ID 등의 기본키(PK) 및 외래키(FK)로 연결된다.

보조사업관리 영역에서는 교부 결정 및 교부 결정에 대한 변경처리내역, 수행기관별 교부 결정정보, 수행자별 교부 결정서 내역 등 교부 결정 정보와 내역사업별 통

계 목적의 개별속성, 공통속성 정보, 중앙관서에서 등록한 내역사업별 (가)내시 정보, 내역사업별 예산배정정보, 예산요구 및 편성 정보, 점검내역 등 내역사업별 정보와 보조사업수행기관, 상세내역사업(보조사업)별 통계 목적의 개별속성, 공통속성 정보, 상세내역사업관리자 정보 등 보조사업 정보, dBrain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세부사업별 예산배정, 예산편성 정보, dBrain시스템 세부사업의 속성 추가정보 등 세부사업 정보, 그리고 BOJO시스템 공모, 자체공모, 공모분야, 공모심의총평 정보 등 공모사업 정보를 관리한다.

〈표 4-4〉 보조사업관리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구분	내용
테이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터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기본, 상세내역사업기본</li> </ul> </li> <li>•일반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내역, 공모분야, 공모심의총평, 교부 결정, 교부 결정변경, 내역사업개별속성, 내역사업공통속성, 내역사업내시, 내역사업세출예산배정, 내역사업예산, 보조사업교부방법, 보조사업수행기관, 상세내역사업공통속성, 세부사업, 세부사업예산, 수행자별교부 결정 등</li> </ul> </li> </ul>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키(PK)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번호, 분야ID, 사업연도, 상세내역사업ID, 교부 결정순번, 교부 결정변경순번, 내역사업ID, 개별속성ID, 공통속성ID, 추경차수, 예산확정구분코드, 지출세목ID, 광역기초구분코드, 자치단체코드, 교부처ID, 자치단체사업코드, 재무관서코드, 관리재ID, 일선관서코드, 집행월, 소관코드, 속성분류코드, 내역순번, 내역사업점검내역번호, 과제번호, 예산지출구분코드, 사업정보구분코드, 사업정보상세구분코드, 수행기관ID</li> </ul> </li> <li>•주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 결정 관련) 교부처ID, 교부금액, 교부 결정순번, 교부 결정진행상태, 결정금액, 결정일자, 통지일자, 교부 결정사유, 결정근거, 결정수행기관, 결정행정일선관서, 결정대상기관, 재무일선관서, 지출세목, 상위내역사업, 과제번호, 교부 신청자 수, 교부목적, 광역자치단체, 광역세부사업, 기타 교부변경 관련 내역 등</li> <li>- (내역사업 관련) 사업연도, 내역사업ID, 세부사업ID, 내역사업명, 내역사업상분류, 중분류, 존속기간 설정여부, 사업시작일자, 사업종료일자, 총사업금액, 당해연도사업금액, 보조사업기본유형, 보조금지급주기, 보조형태, 국고보조금비율, 자치단체보조금비율, 자부담비율, 기타부담금비율, 사업목적, 보조형태, 법정근거여부, 계속구분, 근거 법령, 일선관서ID, 세부사업, 지출세목, 예산지출구분, 예산배정액, 세부사업, 내역사업, 추경차수, 예산확정구분, 내역사업편성진행상태, 예산기금구분, 기금변경구분, 예산금액, 조정금액, 세출확정내역, 산출근거, 최하단위단계여부 등</li> </ul> </li> </ul>

구분	내용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관련) 사업연도, 상세내역사업, 내역사업사업연도, 내역사업ID, 상위내역사업, 상세내역사업ID, 상세내역사업명, 상세내역사업차수, 지출세목, 사업시작일자, 사업종료일자, 총사업금액, 당해연도사업금액, 예산편성금액, 보조사업기본유형, 보조사업상세유형, 보조금지급주기, 보조형태구분, 국고보조금비율,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비율, 자부담비율, 자부담금, 기타부담금비율, 기타부담금, 보조형태설명, 법정근거여부, 기관유형, 교부방법 등</li> <li>- (세부사업 관련) 사업연도, 세부사업ID, 단위사업ID, 세부사업명, 사업기간구분, 사업시작/종료일자, 총사업비금액, 국고포함여부, 지방비포함여부, 기타포함여부, 수행방식, 착수구분, 사업분류, 재무거래지출코드, 사업재원, 사업목적, 사업규모, 지원조건/근거, 추진경위, 승인상태, 사업종료사유, 지출세목, 추경차수, 예산확정구분, 예산기금구분, 기금변경구분, 편성조정상태, 예산금액 등</li> <li>- (공모 관련) 사업시작일자, 사업종료일자, 지원예산액, 지원내용, 공고시작일자, 공고종료일자, 접수시작일자, 접수종료일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공고방법, 선정일자, 통보일자, 주관기관, 근거공모번호</li> </ul>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집행정산 영역

집행정산 영역은 1개(카드)의 마스터 테이블과 66개의 일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간 교부반납ID, 교부이체ID, 계정ID, 협약ID, 집행ID, 검토ID, 이체요청ID, 증빙요청ID, 계좌번호, 은행코드, 세부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수행기관ID, 과제번호, 전자세금계산서승인번호, 카드번호 등의 기본키(PK) 및 외래키(FK)로 연결된다.

집행정산 영역에서는 교부반납 정보, 교부이체 건에 대한 상세내역 정보, 수행기관별 예산 내역 정보, 집행거래처에 대한 항목별 세부 정보, 집행변경요청 정보, 보조사업자가 집행처리를 하는 집행비목, 집행실행재원, 집행요청 등록원장, 집행재원, 재원별 집행실적 등 정보, 보조금전용카드로 등록된 보조금카드 정보 및 캐시백 정보, 마감잔액, 시재금 정보 등 예탁금 정보, 보조사업자가 집행처리를 하기 위한 집행원인 행위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납부계획, 정산 및 정산검토, 정산고지, 정산반납, 정산집행재원 등의 정산 정보를 관리한다.

〈표 4-5〉 집행정산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구분	내용
테이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터 테이블 - 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테이블 - 교부반납(요청), 교부반납(요청)재원, 교부이체, 납부계획, 마감계정잔액, 배분이자율관리, 수행기관 별예산내역, 시재금산정항목, 예탁계좌이자, 이월신청, 일별협약재원잔액, 입금요청, 입금요청재원, 자금운영계획,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빙수신, 정기예금거래, 정산, 정산검토, 정산반납 집계이체, 정산불인정반납, 정산비예치형이자내역수익금내역, 집행거래처, 집행변경요청, 집행실적 집계, 집행예외사유, 집행요청, 집행재원, 카드영수증, 캐쉬백재원별배부내역 등</li> </ul>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키(PK) 항목 - 교부반납ID, 교부반납요청ID, 재원구분코드, 교부이체ID, 교부순번, 납부계획ID, 계정ID, 마감순번, 계좌번호, 은행코드, 복원ID, 복원순번, 사업연도, 내역사업ID, 세부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수행기관ID, 예탁계좌이자ID, 협약ID, 이월사업연도, 입금요청ID, 자금운영계획ID, 집행ID, 전자세금계산서승인번호, 품목순번, 정기예금거래ID, 검토ID, 이력순번, 비목순번, 인력등록순번, 집계이체ID, 상세순번, 잔액반납구분코드, 반납순번, 과제번호, 이자발생일자, 증빙요청ID,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차수, 보조세목코드, 실적수신일자, 이체요청ID, 집행예외순번, 집행그룹ID, 카드번호, 매입수신번호, 카드사코드, 카드구분코드, 카드실적시스템코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항목 - (교부반납 관련) 교부반납ID, 협약ID, 사업연도, 상세내역사업ID, 교부 결정순번, 수행기관ID, 상위사업연도, 상위상세내역사업ID, 상위수행기관ID, 교부반납일자, 교부반납상태코드, 반납처리구분코드, 교부반납요청ID, 교부반납요청금액, 관련교부이체ID, 재원구분코드, 교부반납금액, 교부반납합계금액 등 - (교부이체 관련) 교부이체ID, 협약ID, 교부처협약ID, 사업연도, 상세내역사업ID, 교부 결정순번, 수행기관ID, 교부이체순번, 민간재교부여부, 재원구분코드, 보조세목코드, 교부요청일자, 교부요청금액, 교부이체일자, 교부이체시각, 교부이체금액, 교부요청상태코드, 보조금비율, 연계시스템구분코드, 교부실적연계여부, 원교부이체ID, 관련교부이체ID, 교부업무처리코드, e호조교부실적연계여부, 에듀파인교부실적연계여부, 교부이체구분코드, 교부 신청자 수, 일별실적집계처리상태코드, 교부순번, 상위사업연도, 상위상세내역사업ID, 상위수행기관ID 등 - (집행 관련) 집행ID, 사업ID, 사업연도, 수행기관ID, 집행실행일자, 재원구분코드, 보조세목코드, 보조세목코드, 증빙구분코드, 연계시스템구분코드, 실적수신일자, 집행합계금액, 집행실적변경일자, 집행거래처 상세정보, 변경차수, 집행변경요청ID, 집행변경상태코드, 집행(변경)공급가액, 집행(변경)부가가치세, 집행(변경)합계금액, 사업비이전대상여부, 비목순번, 재원구분코드, (변경)보조세목코드, (변경)품목명, (변경)재원공급가액, (변경)재원부가가치세, (변경)재원합계금액, 실행재원별출(입)금액, 집행요청등록원장 정보, 보조금전용카드 정보, 예탁금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 - (정산 관련) 정산ID, 협약ID, 정산구분코드, 정산처리구분코드, 정산시작/종료/생성일자, 사업비(집행)국고/지방보조금액, 사업비(집행)자부담금, 국고/지방/광역/기초/보조금교부수신/지급금액, 보조금비율, 전기이월국고/지방(집행)보조금액, 전기이월(집행)자부담금, 사용잔액국고/지방보조금액, 사용잔액자부담금, 정산검토정보, 정산반납정보, 납부계획 정보, 기타 이월 정보 등</li> </ul>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라. 공통·총괄조정 및 정보공개 영역

공통 영역은 2개(교부처, 사용자)의 마스터 테이블과 1개의 일반 테이블, 총괄조정 영역은 4개의 일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공개 영역은 2개(재산대장, 정보공시기본)의 마스터 테이블, 13개의 일반 테이블, 4개의 통계 테이블, 각각 1개의 이력 테이블과 코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영역에는 교부처ID, 교부처명, 교부처구분, 기관유형 등 교부처(거래처)의 정보를 관리하는 교부처 정보와 사용자ID, 사용자명, 인증서, 소속 등 사용자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며, 총괄조정 영역에는 연장평가(존속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평가지침 등에 대한 내역을 등록·관리하는 연장평가 정보와 적격성심사(신규사업)로 엑셀 업로드 후 저장되는 적격성심사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 영역에는 정보공개 항목과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와 중요재산 정보들이 관리되고 있다.

〈표 4-6〉 공통 등 영역 주요 테이블 정보

영역	구분	내용
공통	테이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터 테이블: 교부처, 사용자</li> <li>•일반 테이블: 사용자부가</li> </ul>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처 관련 - 교부처ID, 교부처명, 교부처구분코드, 교부처상세구분코드, 기관코드, 기관유형코드, 전화번호, 대표자명, 설립연도, 주소 등</li> <li>•사용자 관련 - 사용자ID, 사용자명, 기관유형코드, 기관코드, 인증서구분코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급명, 연계시스템ID, 교부처ID 등</li> </ul>
총괄 조정	테이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테이블: 심사결과, 연장평가, 적격성심사, 평가지침</li> </ul>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평가 관련 - 연장평가관리순번, 사업연도, 세부사업ID, 평가구분코드, 평가자료 및 결과자료 첨부파일ID 등</li> <li>•적격성심사 관련 - 심사관리순번, 세부사업명, 사업연도, 소관명, 사업시작/종료년도, 총사업비, 국고율, 예산요구액, 심사결과단계코드, 심사진행상태코드, 심사결과내용, 첨부파일ID, 평가지침ID 등</li> </ul>

영역	구분	내용
정보 공개	테이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터 테이블: 재산대장_정보공개, 정보공시기본</li> <li>•일반 테이블 등: 신고포상제재현황공개, 재무제표결산서, 정보공시과제기본, 정보공시교부 신청, 정보공시교부 신청, 정보공시마감, 정보공시사업계획서, 정보공시수입내역, 정보공시정산보고서, 정보공시지출내역, 중앙부처별보조사업자 현황공개, 중앙부처별수령자현황공개, 지자체별보조사업자현황공개, 지자체별수령자현황공개(일반), 수행기관별보조금집행실적공개, 실적보고서공개, 중앙부처별보조금집행현황공개, 지자체별보조금집행현황공개(통계), 정보공개항목(코드), 재산이력_정보공개(이력)</li> </ul>
	주요 컬럼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공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기관별보조금집행실적, 신고포상제재현황, 정산실적보고서, 재무제표결산서, 재산대장, 재산이력, 정보공개항목, 부처별보조금집행현황, 부처별보조사업자현황, 부처별수령자현황, 지자체별보조금집행현황, 지자체별보조사업자현황, 지자체별수령자현황 등</li> </ul> </li> <li>•정보공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연도, 내역사업ID, 상세내역사업ID, 수행기관ID, 공시년도, 집행금액, 교부금액, 정산금액, 감사보고서제출대상여부, 공시기한종료일자, 공시상태구분코드, 확정일자, 감사지적사항공시여부, 감사보고서공시여부, 정산보고서검증결과공시여부, 재무제표결산서공시여부, 기타고시사항공시여부 등</li> </ul> </li> </ul>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마. 주요 정보 항목 분석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보유정보 중에서도 일부는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 정보에 해당하거나, 반드시 최종 검토 및 확정 과정을 거쳐 저장되므로 보다 높은 신뢰도와 충실도를 보여주는 항목들이 있다.<sup>28)</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 절에서 정리한 e나라도움 보조금DW 정보는 보조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기본정보와 그 밖에 다양한 선택정보들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사업관리를 하는 데 핵심적인 기본정보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2021년 5월 말 시점에서 e나라도움 보조금DW에 저장된 2020년 보조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sup>29)</sup>

### 1) 내역사업 단위 정보

본 연구는 실제 보조금DW 정보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업연도가 2020년인 내역사업 데이터와 보조사업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진다. 또한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해야 하므로 e나라도움시스템에는 예산에서 정해진 기본 정보가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구조화되어 관리되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및 하위보조사업자의 업무가 모두 시스템을 통해 연결된다.<sup>30)</sup>

먼저 내역사업 단위 주요 정보 테이블(내역사업진행단계코드가 모두 검토완료에 해당)을 분석한 결과, 총 4,860개의 내역사업ID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상위 세부사업ID는 1,69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전체 세출예산배정액은 107.0조 원으로, 일반예산 82.5조 원, 추경 1~4차 22.2조 원, 이월 0.5조 원, 예비비 0.5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변경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이전 사업은 2,813개로,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가 1,030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017개로 나타났으며, 민간이전 사업은 2,047개로, 이 중 민간경상보조가 2,614개, 민간자본보조가 199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e호조시스템 사업은 2,057개, 에듀파인 사업은 87개에 해

28) 예컨대 「통합관리지침」제4조의2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고,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역사업별 기본정보는 속성표 기준에 맞추어 저장되어 있다. 후자의 예로는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단계에서 최종 정산내역이 저장되기까지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마감하고 이자, 잔액, 수익금을 등록 및 확인하면 상위보조사업자의 검토를 거친 후 정산완료 처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9) 이 데이터는 단순히 주요 정보 항목에 대한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2021년 5월 24일 시점에 보조금DW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추경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e나라도움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0)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내역사업의 기본속성 등록→공통속성 매핑→개별속성 등록으로 (1) 사업 생성 후, dBrain의 세부사업 예산정보를 수신받아 (2) 내역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확정하고, 이후 세부사업 담당자가 (3) 내역사업별로 예산 및 사업 배정을 한다.

당하였다.

사업유형별구분 항목을 살펴보면, 급여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은 총 111개로 이 중 직접지급형 사업이 39개, 간접지급형 사업이 72개였다. 사업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은 나머지 4,749개로, 이 중에는 직접수행형 사업이 85개, 위탁수행형 사업이 4,502개, 복합수행형 사업이 162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급여형 보조금일 경우 보조금지급주기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었는데, 직접지급형 사업은 주기에 따라 수시 4개, 월 15개, 분기 16개, 반기 1개, 연 3개의 사업이 해당되었으며, 간접지급형 사업은 수시 16개, 월 29개, 분기 15개, 반기 6개, 연 5개의 사업과 정보가 누락된 1개 사업이 존재하였다.

보조형태구분 항목을 보면, 정액보조금 형태의 내역사업은 2,398개, 정률보조금 형태의 내역사업은 2,462개였고, 차등보조금 형태의 사업은 내역사업 단위에서는 보조형태구분코드로 관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률 보조사업으로 구분코드가 매겨진 사업들은 모두 국고보조금 비율 등(국고보조금 비율 또는 자치단체보조금비율, 자부담비율, 기타부담금 비율)의 값이 모두 입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값을 살펴보면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되는 사례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100%가 아닌데 나머지 항목 값(자치단체보조금비율, 자부담비율, 기타부담금 비율)의 입력 누락으로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수의 확률로 0 또는 null 값으로 입력되어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역사업의 하위 보조사업

들을 확인해 본 결과 보조 형태가 정률과 정액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역사업 단위에서 보조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up>31)</sup>

법률 근거 여부 항목에 있어 법정으로 표시된 내역사업이 357개, 비법정으로 표시된 내역사업이 4,503개였다. 법정 보조금 사업은 모두 근거 법령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으며, 비법정으로 구분된 사업들도 약 34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근거 법령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다.<sup>32)</sup> 다만 근거 법령 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기입 내용의 형태 및 구체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시스템의 법정/비법정 여부가 dBrain시스템상 의무/재량지출 속성구분과 일치하는 속성은 아닌 것으로 확인해 단순히 법정 근거 여부를 의미하는 속성값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다.

존속기간 설정 여부 항목에 따라 존속기간이 없는 내역사업 3,326개, 있는 내역사업 943개, 구분 표시가 없는 내역사업 591개로 파악되었다. 이 중 존속기간이 없는 사업은 의무지출 사업(146개), 계속사업(2,907개),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148개),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125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존속기간이 있는 사업은 존속평가 연도에 따라 2014년 24개, 2015년 41개, 2016년 165개, 2017년 159개, 2018년 216개, 2019년 305개, 2020년 33개로 구분되었다.

그 밖에 내역사업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마스터 테이블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가 빈값 없이 모두 채워진 항목으로는 사업연도, 내역사업ID, 세부사업ID, 내역사업코드, 내역사업명, 존속기간설정여부, 사업시작일자, 사업종료일자, 보조사업기본유형코드, 보조사업상세유형코드, 보조형태구분코드, 사업목적, 사업규모, 법정근거여부, 계속구분코드, 근거 법령내용, 지원조건내용, 소관코드, 관리자지정여부, 담당자지정여부, 내역사업진행단계코드, 대외비여부 등이고, 내역사업 상/중분류코드, 개별속성 및 공통속성 항목, 기준보조율 근거내용, 총사업금액, 당해연도사업금액 등의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입력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2021)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보조 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방식 또는 기준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데이터 확인 결과 실무적으로는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해당사항 없음(11건), 기타(1건), \*... 등 특수문자(22건)로 기입하여 사실상 근거 법령 내용이 없는 사업이 약 34건 존재했다. 이와 같이 근거 법령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기입된 내역사업 총 34개 중 산림청 사업이 2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8개), 산업통상자원부(3개), 교육부, 행정안전부(2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1개)의 사업이 있었다.

## 2) 보조사업 단위 정보

다음으로 보조사업 단위 주요 정보 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6만 1,374개의 상세내역사업ID가 존재하였고, 이와 연계된 내역사업ID는 4,860개로 집계되어 앞선 내역사업 테이블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국고보조금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126.0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최종 보조사업차수 현황을 살펴보면, 2차인 보조사업 수가 16만 8,19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차 5만 2,504개, 1차 3만 4,509개, 5차 4,294개, 4차 1,372개, 6차 505개 순이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는 2차가 76.6조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차 45.1조 원, 3차 4.2조 원, 4차 0.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은 21만 4,657개,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4만 6,717개로 국고보조금 예산은 각각 94.6조 원과 31.4조 원이었으며,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 15만 5,430개(74.4조 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5만 9,227개(20.2조 원), 민간경상보조가 2,614개(27.4조 원), 민간자본보조가 199개(3.9조 원)로 분석되었다.

사업유형별구분 항목을 보면, 급여형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은 2만 1,390개로 45.5조 원, 사업형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은 나머지 23만 9,984개로 80.5조 원이었다. 이 중 직접지급형 사업이 5,366개(6.5조 원), 간접지급형 사업이 1만 6,024개(39.0조 원), 직접수행형 사업이 7,617개(1.3조 원), 위탁수행형 사업이 21만 697개(75.4조 원), 복합수행형 사업이 2만 1,670개(3.8조 원)였다.

보조형태구분 항목을 보면, 정액 보조사업은 16만 2,409개로 79.9조 원, 정률 보조사업은 9만 8,916개로 41.6조 원, 구분되지 않은 보조사업이 49개였다. 한편 이 보조사업과 연계된 내역사업 수는 정액보조 사업이 4,049개, 정률보조 내역사업이 2,390개, 구분되지 않은 사업이 45개로 집계되어 앞서 살펴본 내역사업 단위 테이블 분석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동일한 내역사업 하위의 보조사업들 중 정액보조와 정률보조가 모두 있는 경우가 존재하여 내역사업 단위에서는 정확한 집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보조사업자 유형별 보조사업 수는 개인 2만 8,842개(0.2조 원), 공공기관 및 단

체 9,608개(19.4조 원), 광역자치단체 2만 92개(17.3조 원), 교육청 337개(1.3조 원), 기금관리기관 117개(3.3조 원), 기초자치단체 9만 8,324개(69.1조 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5만 8,725개(10.2조 원), 중앙부처 978개(92.6억 원), 학교 4만 4,531개(5.2조 원)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사업의 차수는 1차부터 6차까지 있었으며, 최종 보조사업 단계가 1차인 보조사업이 3만 4,509개(45.1조 원), 2차 16만 8,190개(76.6조 원), 3차 5만 2,504개(4.2조 원), 4차 1,372개(0.1조 원), 5차 4,294개(108억 원), 6차 505개(7.4억 원)로 분석되었다.

## 3) 분야·소관별 교차 정보

분야별 내역사업은 문화및관광 분야가 1,15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수산(953개), 사회복지(655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1개), 보건(424개), 교통및물류(342개), 환경(265개), 일반지방행정(155개), 공공질서및안전(111개), 국토및지역개발(104개) 등의 순이었다. 또한 회계/기금별 내역사업은 일반회계 2,166개, 특별회계 1,317개, 기금 1,377개의 사업이 해당되었다. 한편 분야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분야가 6만 9,08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수산(6만 2,281개), 문화및관광(3만 8,116개), 보건(3만 2,024개), 교육(1만 8,038개), 환경(1만 1,831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만 713개), 공공질서및안전(4,672개), 교통및안전(4,19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형 내역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 48개로 가장 많은 사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농림수산(21개), 공공질서및안전(15개), 교통및물류(8개), 문화및관광(5개), 보건(4개)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현황은 정액보조금 사업의 경우 문화및관광 분야가 84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복지(332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37개), 보건(204개), 교통및물류(114개), 일반·지방행정(111개), 환경(99개) 등의 순이었으며, 정률보조금 사업은 농림수산 분야가 78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323개), 문화및관광(302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34개), 교통및물류(228개), 보건(220개), 환경(166개) 등의 순이었다.

〈표 4-7〉 분야별 보조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 조원)

구분	세부사업 수	내역사업 수	보조사업 수	보조금 규모
일반·지방행정	62	155	3,778	14
공공질서및안전	64	111	4,672	2.1
통일·외교	23	47	1,545	3.1
국방	7	9	112	0
교육	44	100	18,138	1.2
문화및관광	264	1,150	38,116	6.7
환경	133	265	11,831	6.3
사회복지	242	655	69,083	58.1
보건	124	424	32,024	3.2
농림수산	285	953	62,281	1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3	471	10,713	10.9
교통및물류	199	342	4,198	3.8
통신	29	44	86	0.2
국토및지역개발	48	104	4,067	2.6
과학기술	12	30	730	0.1
총합계	1,699	4,860	261,374	126

주: 이 데이터는 2021년 5월 말 시점에 보조금DW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e나라도움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음.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조사업관리DB 정보(2021년 5월 말 기준)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2,462개 정률 보조사업 중 기준보조율 결정근거내용을 기입한 사업은 116개에 불과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 근거 법령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단순한 법령명만 간단히 기입하거나 0값으로 입력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다.

소관부처별 내역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96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667개), 농림축산식품부(534개), 해양수산부(337개), 산업통상자원부(315개), 국토교통부(292개), 환경부(246개), 중소벤처기업부(163개), 행정안전부(161개), 산림청(15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4개), 여성가족부(125개), 교육부(101

개), 국가보훈처(100개), 문화재청(95개) 등의 순이었다. 사업유형별 구분 항목을 분석해본 결과, 급여형 내역사업은 보건복지부가 3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16개), 경찰청(14개), 해양수산부(10개), 고용노동부, 문화재청(5개),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안전부(4개),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3개) 등의 순이었으며, 사업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96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632개), 농림축산식품부(518개), 해양수산부(327개) 등의 순이었다. 보조형태별로는 정액 보조금 형태의 내역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7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287개), 농림축산식품부(15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9개) 등의 순이고, 정률 보조금 형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4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380개), 문화체육관광부(246개), 국토교통부(222개), 해양수산부(2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소관별 보조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

구분	세부사업 수	내역사업 수	보조사업 수	보조금 규모
국회	4	14	16	0
대법원	4	7	429	0
헌법재판소	1	1	1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	2	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	5	0
법무부	17	41	1,038	0.2
국방부	6	8	44	0
고용노동부	48	75	5,102	5
통일부	13	23	437	2.9
국가보훈처	32	100	2,455	0.2
산림청	39	158	16,879	1.3
농촌진흥청	20	64	7,119	0.3
특허청	8	11	412	0.1
환경부	129	246	11,508	6.3
경찰청	15	17	152	0.1
공정거래위원회	1	17	48	0

구분	세부사업 수	내역사업 수	보조사업 수	보조금 규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15	798	0
문화재청	35	95	3,898	0.7
국가인권위원회	1	1	12	0
방위사업청	1	1	68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	0
기획재정부	12	19	1,303	0.5
문화체육관광부	196	966	33,646	5.7
보건복지부	197	667	70,448	49.2
여성가족부	38	125	11,548	1.3
방송통신위원회	8	14	14	0
금융위원회	6	10	135	0
국민권익위원회	1	1	12	0
교육부	45	101	18,163	1.4
외교부	7	9	310	0.2
농림축산식품부	168	534	33,227	11
산업통상자원부	106	315	5,057	4.2
국토교통부	188	292	7,182	8.6
해양수산부	118	337	6,838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1	30	2,088	0.2
새만금개발청	3	4	8	0
행정안전부	67	161	11,816	17.3
중소벤처기업부	49	163	5,237	6.6
소방청	6	7	85	0
해양경찰청	2	2	6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	0
질병관리청	9	49	2,197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154	1,629	0.5
총합계	1,699	4,860	261,374	126

주: 이 데이터는 2021년 5월 말 시점에 보조금DW에 누적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e나라도움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음.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조사업관리DB 정보(2021년 5월 말 기준) 활용하여 저자 계산.

## V.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설계 방향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기본 목적은 국고보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행정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국고보조금 실제적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모니터링, 평가,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로서 갖춰야 할 요건들과 국고보조금 통계 고유의 특성을 기초로 국고보조금 지표체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바탕을 이루는 원칙을 이야기해 보고, 기본체계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sup>33)</sup>

### 1. 지표설계의 기본 원칙

#### 가. 주요 목적

국고보조금 통계의 경우 현상의 파악을 지표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각각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지표 값들을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표 개발에 있어 주요 목적이 현상의 단순 측정에 집중하는 것인지, 정책과의 연계에 집중하는 것인지에 따라 지표의 내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지표체계를 설계할 때 현상 파악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방점을 두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수에 가까운 보조사업 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미시적 수준의 정보라 할 지라도 일관된 통계 기준의 틀을 통해 객관적 분석·비교가 가능하게끔 설계된 부분이

33) 기본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후의 단계는 세부체계의 설계와 개별 지표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본 연구의 주제 밖의 범위이므로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상 측정을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개발의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4)</sup> 그러므로 국고보조금 통계의 잠재적 사용자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 통계의 대표적인 기능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등의 판단 근거를 마련해 준다. 특히 국고보조금 통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이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계를 통해 정책이 목표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정책 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을 통해 사회의 목적을 실현하고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는 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고, 시계열적인 정보의 활용으로 재정운용 방향이나 사회 현상 등 예측 기능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통계의 사회적 보고 기능의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다.<sup>35)</sup> 사회적 보고 기능은 국고보조금 통계가 사회적 보고의 체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e나라도움 포털 사이트와 정부의 재정통계 현황 자료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체계화된 틀을 기반으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 단, 이는 설계의 우선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현상 측정 중심의 지표 개발이 모두 완료된 이후 정책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5) 김은하·최향석(2015)이 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사회적 보고 기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라.

## 나. 제공 대상

국고보조금 통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통계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회원 가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여부에 따른 기준<sup>36)</sup>이며, 둘째로 소속이 정부 관계자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인가 여부에 따른 기준<sup>37)</sup>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계의 이용자를 <표 5-1>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함으로써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가능해진다.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회원)는 다시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관리/실무자인 중앙·지방관서 공무원이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는 공모사업 신청자, 상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또한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자(비회원) 중 국고보조금 통계의 잠재적 이용자를 그 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정부 관계자는 정책결정자, 일반 국민으로는 보조금 수령자(수급자, 거래처), 연구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8)</sup> 이러한 통계 이용자 구분별로 통계 이용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계지표 설계 및 통계작성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파악된 사용자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각각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즉 효율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지표가 필요할 것이며, e나라도움시스템 비사용

36) 회원 가입하여 사용하는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설명은 3장의 2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37) 이때 직업은 공무원일지라도 보조금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순히 국가 정책 모니터링 목적에서 통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이용자는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8) 보조금 수령자는 수급자와 거래처로 구분되며, e나라도움시스템 내 자체 역할은 없어서 회원가입 사용자는 아니나,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정보를 관리함. 수급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 기초연금 수령자 등 해당하며, 거래처는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조사업자 기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 등이 해당한다.

자 중 정책결정자 또는 입안자의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또는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정무적 평가와 방향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서 통계지표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이론, 제도, 정책 효과 분석 등을 위한 통계가, 일반 국민은 국정 상황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누구나 국가 정책 및 지표를 더 잘 이해하고 국정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5-1〉 국고보조금 통계의 잠재적 사용자 구분

구분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회원)	e나라도움시스템 비사용자
정부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서 관리/담당자</li> <li>• 지방자치단체 관리/담당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결정자, 입안자 (기재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장 등)</li> </ul>
일반 국민 (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신청자</li> <li>• 상위보조사업자 담당자</li> <li>• (민간) 보조사업자 담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수령자(수급자, 거래처)</li> <li>• 연구자/일반 국민(향후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국가재정 현황을 모니터링하려는 자 등)</li> </ul>

주: e나라도움시스템을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비사용자로 구분하였음. 보조금 수령자는 수급자와 거래처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 다. 기본 원칙

### 1) 기준의 일관성

국고보조금 통계의 생산은 e나라도움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표의 체계와 세부지표로 활용되는 정보들이 일관된 통계 기준을 가지고 산출되기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방대한 비정형의 행정 데이터를 함께 다루어야 하다 보니 통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통계는 익명성, 객관성, 정확성을 지녀야 하며,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접근성을 잘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책 활용에 유리한 행정통계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통계작성의 목적이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 자료 수집의 시기와 방법, 표본의 설계, 작성 항목, 자료처리 계획 등을 명확히 할 때 통계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 기준이란 통계자료의 수집, 분류, 처리, 분석 등 모든 통계 활동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더라도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설정된 원칙으로서 명확한 용어 정의, 통계작성 절차의 표준화, 표준분류의 설정 등을 말한다.

이러한 통계 기준 설정을 통해 통계작성의 중복 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통계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계용어의 정의, 측정 단위, 활동의 분류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통계 상호 간의 연관성과 비교성을 높이는 통계 산출이 가능해진다.

### 2) 내용의 포괄성

내용의 포괄성은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e나라도움시스템 보유정보를 대부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 구성의 기본 목적은 단일 주제 영역이나 관점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유정보를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의 체계는 단일, 혹은 한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만이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표체계를 통해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정보의 전체적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정보의 실용성 및 제도 특성

e나라도움시스템은 우수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보조금 관련 모든 시스템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목적 자체도 정책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만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용적인 정보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통계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를 뜻한다. 따라서 지표체계는 일차적으로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 데이터 기반의 실용적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근본적인 내용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틀에서 생성되므로 본질적으로 제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정부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통계정보의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다면, 제도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적절한 정보로 활용할 수도 없다.

또한 제도의 변화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통계에 있어서 지표체계에 존재하는 공백은 향후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공백의 허용이란 각각의 항목이나 영역이 모두 통계정보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비어 있는 영역은 그 자체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현재 지표체계에 비어 있는 영역은 향후 단계적으로 채워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영역으로서 의미가 있다.

#### 4) 통계의 신뢰성

통계의 신뢰성 여부는 통계작성의 각 과정이 잘 계획되었느냐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내실 있는 통계작성에 대한 계획 및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확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정보 제공자들이 정확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관계 자료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통계지표 체계의 구성

### 가. 대상 차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를 근거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고보조금 통계는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보조사업 정보의 관점에서 누가(who), 무엇을 위해(for what), 어떻게(how), 누구에게(for whom)라는 4가지 차원에 대해 일관된 통계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교부 또는 재교부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상위보조사업자 정보는 누가(who)의 차원이다. 대상 사업과 용도 등 보조사업 정보는 무엇을 위해(for what)의 차원에 해당한다. 급여/사업지원, 정률/정액 등 보조 형태나 전달체계 형태 등은 어떻게(how)의 차원에 해당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정보는 누구에게(for whom) 차원의 정보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일부는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재교부하는 역할을 맡을 경우 교부 대상이면서 동시에 교부 주체에 해당하므로 누가(who)와 누구에게(for whom)가 모두 적용된다.

〈표 5-2〉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대상 차원

구분	주요 대상
누가 (who)	• 교부 주체인 중앙관서와 재교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 상위 보조사업자 정보
무엇을 위해 (for what)	• 대상 사업과 용도 등 보조사업 정보
어떻게 (how)	• 급여/사업지원, 정률/정액 등 보조 형태, 전달체계 형태 등 정보
누구에게 (for whom)	•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수급자, 거래처) 정보

## 나. 통계지표의 구성

### 1)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표

한편 통계지표 작성 시 지표 항목의 구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활용 가능한 보유 데이터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는 주로 예산 과정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행정 데이터를 기초로 설계된다. 이러한 행정 데이터는 주로 예산편성 정보 외에는 대부분 사업 설명 정보 위주의 비정형 데이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의 측정이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없다면 예산액 규모,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수 이외에 수량화된 지표를 도출해내기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제약 요건으로 인해 현재 e나라도움 포털은 서비스 경로만 다양하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표의 측정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2021)에서는 사업 성격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사업의 정보를 보여준다든가, 평균(또는 최대, 최소) 기준보조율 값을 보여준다든가, 기본법 등 특정 기준으로 근거 법령을 구분, 또는 보조금 총량 규모나 보조율 등의 구간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정책적, 실무적, 학술적 판단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 지표 항목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

### 2) 명확한 기준의 제시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표 항목의 설정,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주요한

39) 본고 4페이지 <표 2-1>을 참조하라.

결정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보조금 규모의 경우 기준을 훨씬 더 분명하게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e나라도움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조금 규모는 대부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원칙적인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은 내역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후 사업별로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처리가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보조금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본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부액 기준, 정산액 기준, 추정 포함예산 기준, 예산현액 기준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총량 규모를 적용하며,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기준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 3. 통계지표 항목의 설계

### 가. 설계 순서

국고보조금 통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보조금과 보조사업 운영관리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법」에서 제출·등록·통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주요 자료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표 5-3>과 같은데, 이처럼 보조사업 관련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대부분 필수 첨부자료 또는 입력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별로 관리·운영되는데,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은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후 교부 신청 과정에서 보조사업 등록이 처음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역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추는 정보는 주로 예산편성 단계의 정보들이며, 교부관리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들은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를 설계할 때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각각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의미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추가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표 5-3〉 국고보조사업 단계별 주요 제출 자료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계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4,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전 신청)</li> <li>예산(안) 통지 내역(§12, 민간이전 예산 통보는 선택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사업, 경비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9, 매년 예산으로 정해짐)</li> <li>≫ 차등보조율(§10, 관련 사항은 국회 보고 의무)</li> </ul> </li> <li>연장평가결과(§15,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li> </ul>
교부관리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16, 공모사업의 사업 목적,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등)</li> <li>교부 결정 통지 내역(§19,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 작성 내용)</li> </ul>
집행관리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26의2)</li> <li>「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26의2)</li> <li>보조사업 운용평가 등(§26의2)</li> </ul>
정산관리 (사업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첨부서류(§27)</li> <li>보조금 확정 통지 내역(§28), 감사보고서(§27의2) 등</li> </ul>
정보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신청서,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중요재산 공시내역 등(§26의10)</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격 적격여부(§26의2),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단(§36의2) 등</li> </ul>

주: 「보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근거가 되는 조항의 번호는 §로 표기함  
 자료: 「보조금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내역사업 단위 항목

내역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 대표적인 정보는 기본속성, 예산계상 신청 내역, 자치단체이전 예산 통보 내역, 그리고 연장평가 결과 등이다.<sup>40)</sup> 주요 항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5-4〉와 같은데, 여기서 주요여부에 표시된 항목은 이미 e나라도움 포털에서 대국민 공개 중인 항목이다. 그런데 공개되는 정보의 형태를 보면 집계화된 통계지표 형태의 제공은 많지 않으며, 해당 내역사업명을 클릭하면 웹 페이지 새 창 열기 환경에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현재 공개하지 않는 기본 항목은 정합성 검증 등 통계 지표 산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는 122개의 지급 대상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실제 국고보조금(비율), 자치단체보조금(비율), 자부담금(비율), 기타부담금(비율) 등의 정보를 통계화하여 공개하거나, 또는 기준보조율 값을 10% 또는 20% 구간 단위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지표화하여 보조율 구간별 사업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명, 보조금 총량 규모 및 비율(교부액 기준, 정산액 기준, 추경포함예산 기준, 예산현액 기준 등), 보조사업 수, 보조사업자 수 이외에 평균 기준보조율, 보조사업 목적 구분<sup>41)</sup>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집계 통계화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이때 본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부액 기준, 정산액 기준, 추경포함예산 기준, 예산현액 기준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총량 규모를 적용하며,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기준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다수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개별적인 정책목표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지만 현재는 내역사업명을 클릭하면 근거 법령을 보여주는 정도이다. 이에 대해 내역사업별 근거 법령 정보를 모아서, 예컨대 각 기본법(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재난안전기본법 등)을 기준으로 관련 법들을 묶고 해당 법 유형에 근거한 보조사업 규모나 사업 현황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40)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 하단계별로 관리해야 하며,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통지(예산 통보의 경우 자치단체이전은 의무, 민간이전은 선택사항임)해야 한다.

41) 기획재정부(2021)에서는 사업 성격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 4페이지의 〈표 2-1〉을 참조하라.

이 밖에 내역사업별로 공개되는 정보 외에도 매년 연장평가 결과가 첨부파일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데, 향후 의미 있는 지표 형태로 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5-4〉 신규 내역사업의 기본속성 등록 항목

항목	설명	주요여부
상위 세부사업	• 검색 기능으로 세부사업 선택	○
내역사업	• 텍스트값 입력	○
목·세목	•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단체보조는 지방재정/교육재정(복수가능)	
내역사업 성질구분	• 신규/계속/종료(사업기간구분)	
의무적 지출구분	• 의무적지출/재량적지출	
법령 등 근거	• 텍스트값 입력	○
내역사업 기간	• 선택 항목(연월일 단위 선택)	○
존속기간 설정여부	• Y/N/P - N의 경우 설정제외사유 항목 입력	
내역사업분류(상)	• 선택 항목(필수입력사항 아님)	
내역사업분류(중)	• 선택 항목(필수입력사항 아님)	
보조사업유형	• 급여형/사업형	
보조사업상세유형	• 직접지급형/간접지급형/직접수행형/간접수행형/복합수행형	○
보조형태구분	• 정액/정률	○
보조경로	• 텍스트값 입력	
사업목적	• 텍스트값 입력	○
지원대상 및 조건	• 텍스트값 입력	○
주요 사업내용	• 텍스트값 입력	○
사업설명자료	• 첨부파일 형태	
내역사업ID	• 추후 자동으로 생성	
당해연도사업비	• 추후 자동으로 생성(예산현액기준, 천원단위)	○
기타	• 자치단체부담금, 재정융자금, 자기부담금 항목의 값 추후 자동으로 생성(천원 단위)	

주: 주요 항목은 현재 대국민 공개 항목에 해당.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보조사업 단위 항목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는 대표적인 정보로는 공모 정보, 교부 결정 정보,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 정보, 정산보고서 내역, 보조금 확정 통지 내역, 그 외 보조사업자와 중요재산 정보공시 내역 등이다. 특히 보조사업 단위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국고보조금 제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금 교부 방식은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어 보조금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 단위의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는 보조사업차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최종차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전후 차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업 간 통계지표 설정을 어떻게 할지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국고보조금이 dBrain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체되었더라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이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들므로 실집행 정보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에서 세부사업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재정 정보와 지방재정(또는 교육재정) 정보와의 매칭이 주요한 특징이 될 수 있으며, 실집행 정보와 국고보조율과 근거 법령 등이 주요 속성정보로 기능해야 한다.

한편 집행실적 현황을 보여주는 집행률 지표는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산출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예산현액의 값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실제 집행실적인 분자의 크기가 그대로여도 집행률 수준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산출되는 집행률과 함께 이전 집행률 수준을 적절히 비교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률 산출식의 분자와 관련하여 현재 교부액을 사용하여 교부집행률을 산출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집행금액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이체된 실집행액을 분자로 하는 실 집행률을 산출하고 있다. 물론 실집행액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얻는 정보라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 지표값의 정확

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관별, 사업별로 계획 대비 또는 예산현액 대비 실적집행 현황 신호등이나 상황판을 마련하여 비교·제시함으로써 행정 처리가 늦은 지방관서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도 있다.

또한 교부액과 예산현액 기준 규모는 집행현황 통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정산액 기준의 보조금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결산 과정이 없고,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산 정보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시스템 보유정보 중 실무 단계에서 관리 영역 밖으로 정의되어 관심에서 제외되는 정보들이 있다. 지표체계를 설계할 때 이들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도적 특성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제도권 내에 포괄되어야 하는 대상들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들 집단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모사업의 탈락자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이와 같은 탈락자 정보도 다음번 공모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참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중요한 통계에 해당한다.

## Ⅵ. 요약 및 시사점

### 1. 분석내용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방대한 국고보조사업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화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통계지표 작성의 준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의 법·제도적 개념을 반영하여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준거 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체계화된 통계지표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2017년 e나라도움시스템이 구축되고 대국민 포털을 통해 보조사업 단위의 건별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현재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양적 정보는 매우 풍부해졌으나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측면에서는 제약성이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통해 명확한 통계작성 목적을 갖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계 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국고보조사업 관점의 정보에 한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범위의 제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통계지표가 없는 현상에서는 먼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지표의 체계를 설계하고, 이후 지표의 내용을 구상, 작성된 지표의 안정화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보조금 관련 정보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업무는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정산,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진행되며, 보조금DW는 공통 및 총괄조정, 과제관리, 보조사업관

리, 집행정산관리, 정보공개의 5개 주제 영역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본고에서 통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국고보조금 통계 고유의 특성 바탕으로 도출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 통계의 경우 현상의 파악을 지표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보조금 제도 전반에서 각각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다양한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전수에 가까운 보조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차원의 미시적 수준의 정보에 대해 일관된 통계 기준으로 객관적 분석·비교가 가능하게끔 설계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현상 측정을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개발의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고보조금 통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 통계 이용자는 (1)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회원 가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인가 여부와 (2) 소속이 정부 관계자인가 여부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용자 유형별로 이용의 목적이 다름을 고려하여 통계지표 설계 및 통계작성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파악된 사용자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셋째,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고보조금 통계는 누가(who), 무엇을 위해(for what), 어떻게(how), 누구에게(for whom)라는 4가지 차원에 대해 일관된 통계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보조사업의 교부 또는 재교부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는 누가(who)의 차원으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대상 사업과 용도 등 보조사업 정보는 무엇을 위해(for what)의 차원에 해당한다. 또한 급여/사업지원, 정률/정액 등 보조 형태나 전달체계 형태 등은 어떻게(how)의 차원에서 해당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정보는 누구에게(for whom) 차원의 정보이다.

넷째,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표의 측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주

요한 결정 사항으로, 특히 보조금 규모의 경우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본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총량 기준을 사용하여 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결산 과정이 없고,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산 정보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교부액 기준, 정산액 기준, 추정포함예산 기준, 예산현액 기준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총량 규모를 적용하며,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기준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고보조금 통계는 주로 예산 과정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행정 데이터를 기초로 설계되기 때문에 지표의 측정이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없다면 예산액 규모,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수 이외에 수량화된 지표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현재 e나라도움 포털은 서비스 경로만 다양하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표의 측정값이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획재정부(2021)에서 구분하는 보조사업의 7가지 목적별 구분, 근거 법령의 구분, 보조금 총량 규모나 보조율 등 구간 범위 설정, 평균(또는 최대, 최소) 기준보조율 값 등 법·제도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정책적, 실무적, 학술적 판단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 항목을 고민해야 한다.

여섯째, 국고보조금 통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보조금과 보조사업 운영관리 절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 관련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대부분 필수 첨부자료 또는 입력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별로 관리·운영되며,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를 설계할 때는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각각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추고 정보제공이 필요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의미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추가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일곱째, e나라도움 포털에서 대국민 공개 중인 정보의 형태를 보면 집계화된 통계지표 형태의 제공은 많지 않으며, 해당 사업명을 클릭하면 웹페이지 환경에서 텍스

트 정보를 제공하는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기본 항목은 정합성 검증 등 통계지표 산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거 법령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특정 기준으로 관련 법들을 묶고 해당 법 유형에 근거한 보조사업 규모나 사업 현황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별적인 정책목표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sup>42)</sup>

여덟째, 보조금 교부 방식은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어 보조금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 단위의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는 보조사업차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최종차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전후 차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업 간 통계지표 설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재정 정보와 지방재정(또는 교육재정) 정보와의 매칭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e호조시스템을 통해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며, 정산 과정 역시 e호조시스템을 통해 중앙관서로 반납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의 실집행액 산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아홉째, 시스템 보유정보 중에는 실무 단계에서 관리 밖의 영역으로 정의되어 관심에서 제외되는 정보도 많이 존재한다. 제도적 특성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제도권 내에 포괄되어야 하는 대상들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들 집단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의 탈락자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번 공모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참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중요한 통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표체계를 설

42) 본고의 70~73페이지를 참고하라.

계할 때 이들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 기존의 일관성, 내용의 포괄성, 정보의 실용성,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 자료수집의 시기와 방법, 표본의 설계, 작성 항목, 자료처리 계획 등을 명확히 할 때 통계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표체계 구성의 기본 목적은 단일 주제 영역이나 관점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유정보를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표체계는 일차적으로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보조사업 단위의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형태로 산출·제공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해 법·제도 및 이론적 접근과 보유정보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 관점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합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가 기본적으로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보다 국고보조금 통계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행정통계의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실제적 가치와 현재 운영 상황을 포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체계의 원칙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 항목들을 정의하고 작성하는 과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이은 지표 개발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지원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전체 정보들을 최대한 포괄하여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 개념에 비해 e나

라도움시스템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국고보조사업 (특히 급여형 사업보다는 사업수행형 사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표의 개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단순 지표가 아닌 혼합 지표의 개발이나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산출을 위해 정보 수집의 영역을 확대해 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21).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 기획재정부(2021).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권오성·윤기웅(2016).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16-28.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성·배인명·김성철(2005).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은하·최항석(2015).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5-04. 사회보장정보원.
- 김태일·김재홍·현진권(20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6(2):3-19. 한국지방재정학회.
- 박기목(2006).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1):285-301. 한국지방정부학회.
- 손인호·금재덕(2018).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3):283-308. 한국공공관리학회.
- 심지현(2014).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심혜인(2020). 국고보조금 데이터 정보공개 및 활용 대안. 한국재정정보원.
- 오윤섭·홍수완(2015).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감사원.
- 윤기웅·공동성(201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265-291. 한국행정학회.
- 윤석완(2007). 정부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 이삼주·김성주·윤택섭(2015). 지방보조금 평가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187-214.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원희·조임곤·이정희·정성호·박종혁(2013). 지방자율 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조정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재원(201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고 개편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1-34. 한국지방재정학회.

정광호·금현섭·김철희(2011). 고용·노동통계조직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조임곤(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지방재정」.

2016(2):92-1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청(2020). 통계행정편람.

한국재정정보원(2018).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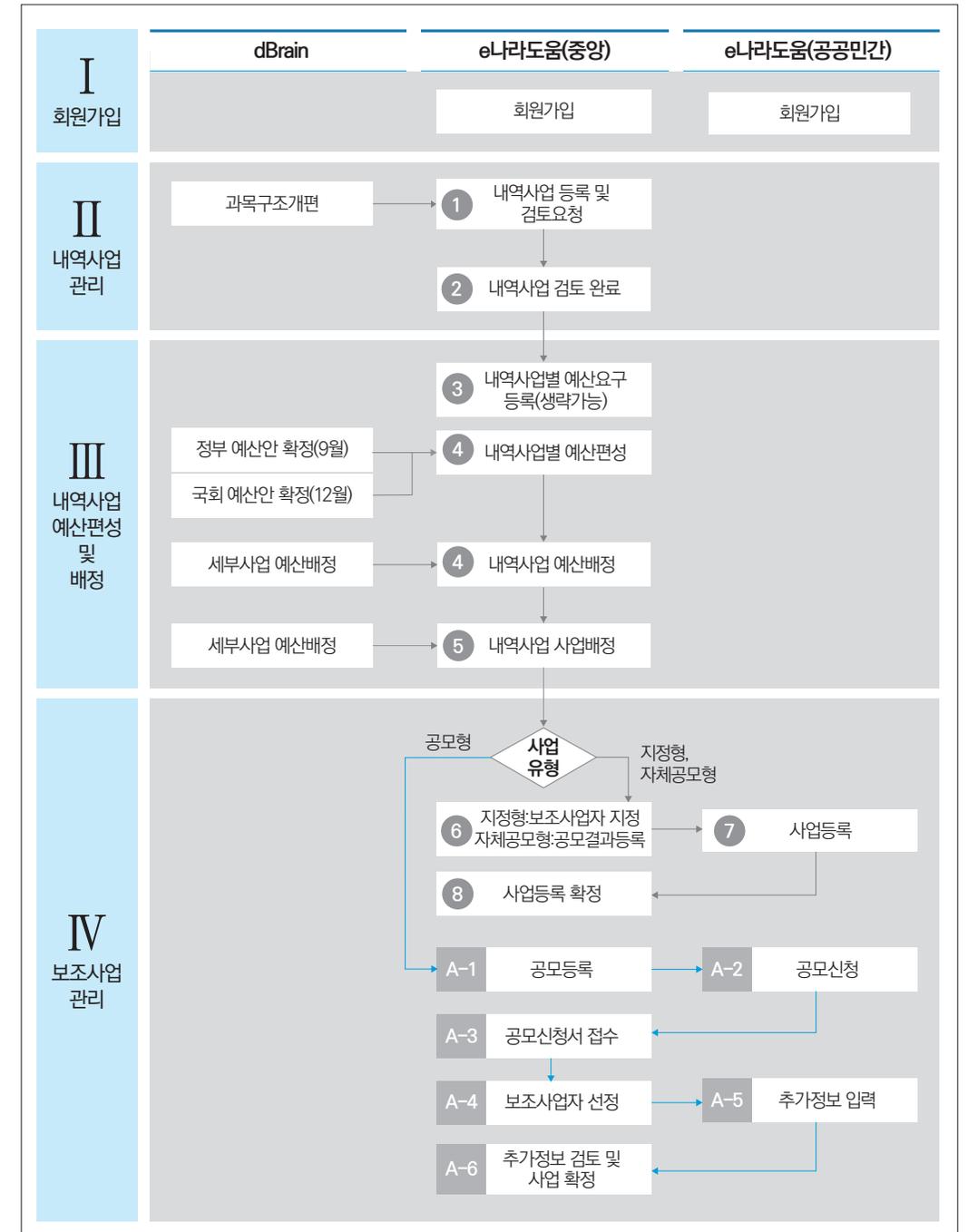
황창호(2015). 정부의 정책 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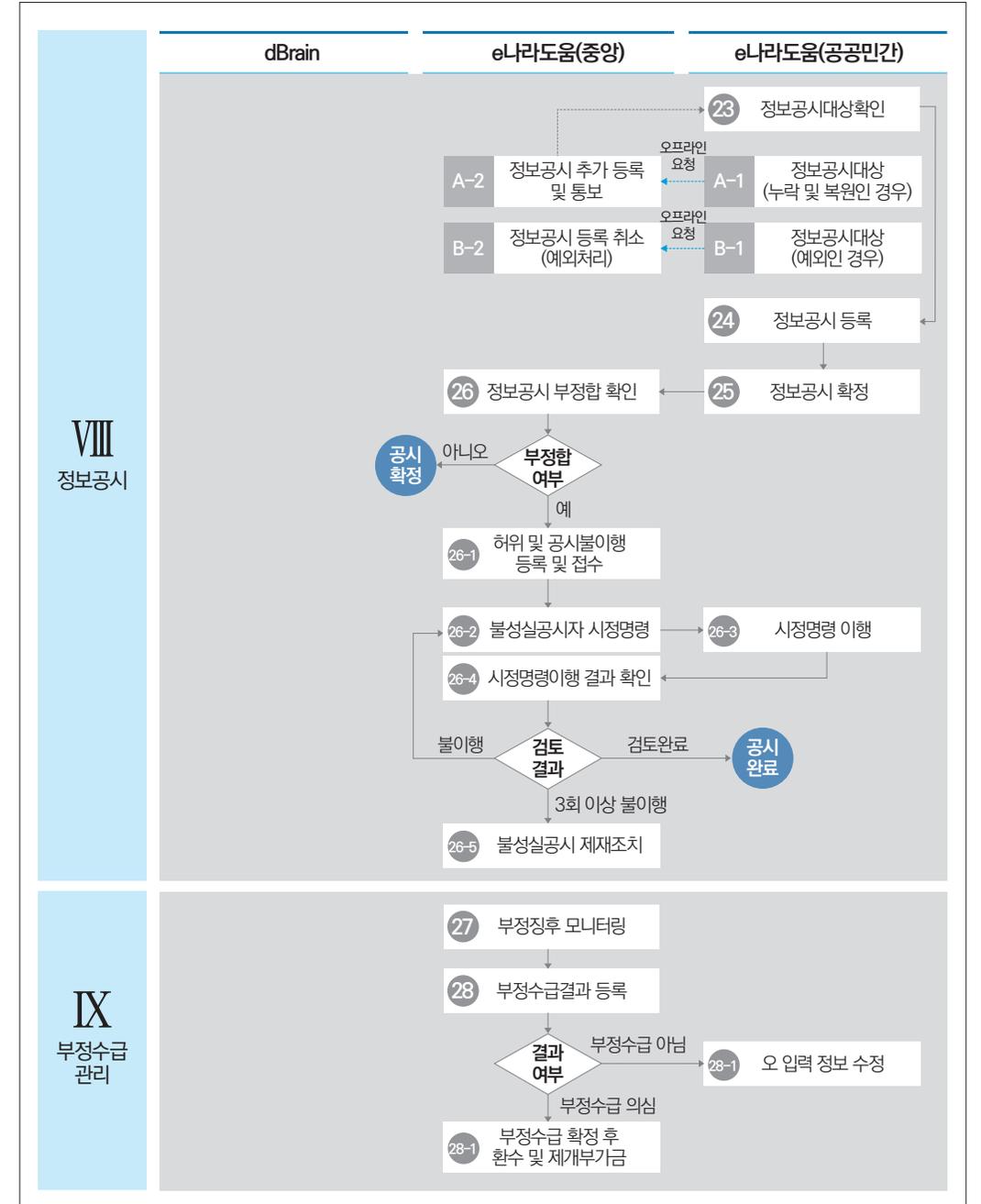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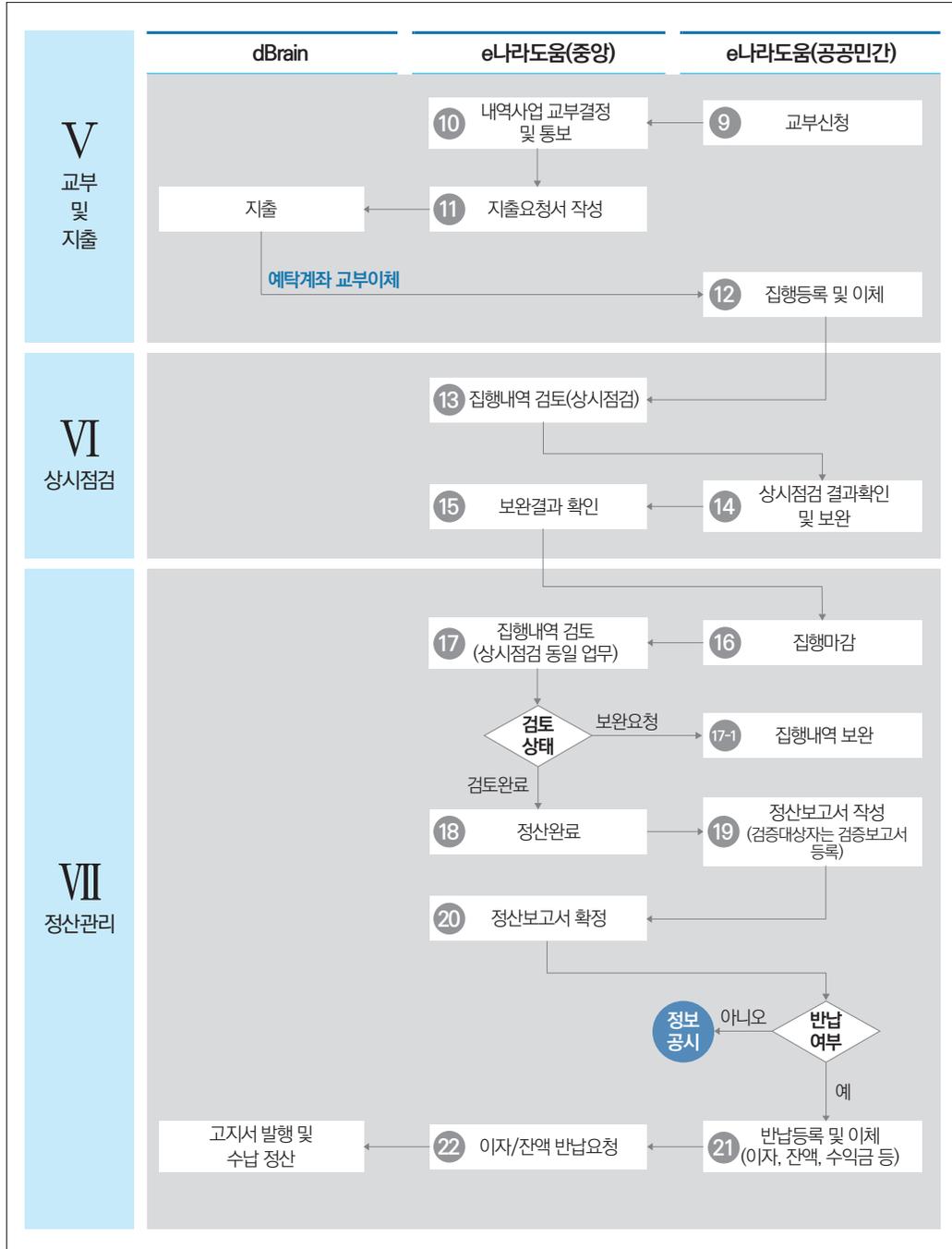
행정논집」 27(4):969-986. 한국정부학회.

Lester M. Salamon(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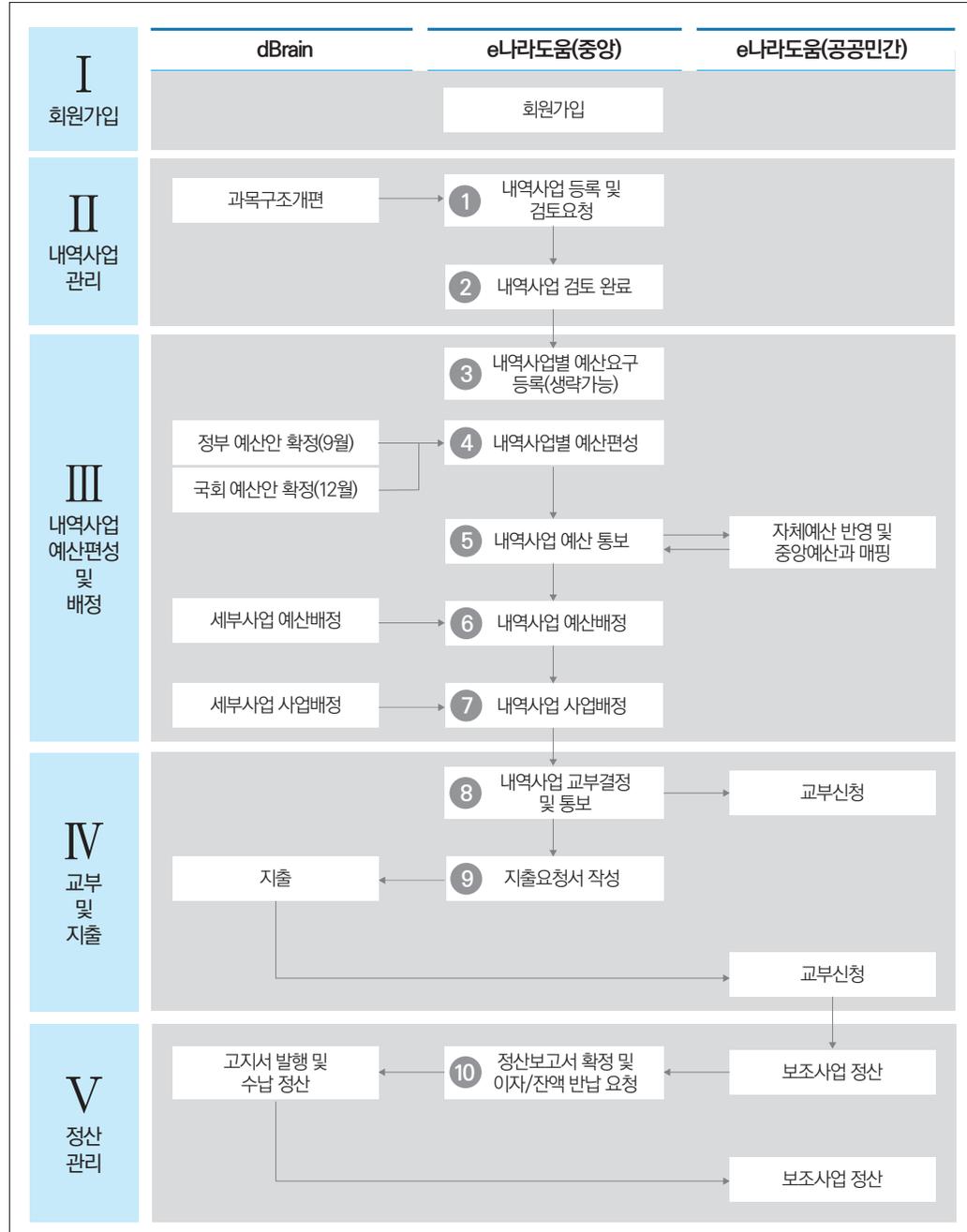
## 〈부록 1〉 e나라도움 민간이전 사업 전체 업무흐름도





자료: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2021.7.)

## 〈부록 2〉 e나라도움 자치단체이전 사업 전체 업무흐름도



자료: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2021.7.)

##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발간월 2021년 12월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 재정정보분석본부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인쇄처 디자인아이 Tel. 02-6358-2124

ISBN 979-11-91094-09-1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결산정보분석부 02-6908-8568

analysis@kpfis.or.kr

